調査分析 00-05

國際協力體 設立을 통한 北韓開發 支援方案

張亨壽 · 朴映坤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國際協力體 設立을 통한
北韓開發 支援方案

調査分析 00-05

國際協力體 設立을 통한 北韓開發 支援方案

張亨壽 · 朴映坤

2000. 12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 언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이어져 오면서 남북한간의 교류가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북한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교류 증대와 함께 최근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자금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한국도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해 대북지원자금의 국내조달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각 방안들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현 상황에서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저자들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 UNDP, 비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으로 구성된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KDAG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제협력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KDAG의 설립 외에도 저자들은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더 이상의 상업적인 신규차관이 제공되지 않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질 수 있는 외채문제 해결방안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경제학부의 張亨壽 교수와 본원 세계지역연구센터의 朴映坤 전문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필자들은 본 연구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 Rice 대학교의 蔡秀燦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의 尹德龍 박사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북한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각계의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00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李 景 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 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차 례

서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7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21

1. 재원조달의 방향 21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27

가.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 27

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가입 후 의무 30

1) 가입조건 30

2) 가입 후 의무 31

다. 국제금융기구 자금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검토 33

3. 북한 신탁기금 설립 34

가.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 사례 36

1) 팔레스타인 36

2) 東티모르 41

3)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43

4) 코소보 44

나. 설립 가능성 검토 및 향후 전망 44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45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49
가. 북한 외채 현황 50
나. 파리클럽 런던클럽을 통한 외채경감 협의 51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 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 그룹(INKDAG) ”설립 53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53
2. INKDAG의 기본 골격 54
3. INKDAG의 장점 60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62
가. 원조조정그룹 62
1) 원조조정그룹 62
2) 원탁회의 64
3) 협의그룹 65
4) 원탁회의와 협의그룹의 비교 65
5) 원탁회의와 협의그룹의 개선방향 66
나. 원조조정 사례 68
1) 북한 68
2) 베트남 68
3) 팔레스타인 70
4) 東티모르 72
5)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72
6) 북한 개발 지원에 대한 시사점 73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73
가. 추진주체 73
나. KEDO와의 관계 설정 78
다.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의 구성 비중 79

라. 외채출자전환 방식에 의한 북한 외채경감 79
마. 예상되는 주요국의 입장 81

제4장 결론 83

<부록 Ⅰ> 원조조정그룹 개요 87
1. **원조조정그룹의 역할** 87
2. **원조조정그룹의 운영** 87
3. **원조조정그룹의 지원** 88
4. **원조조정 대상** 90
5. **원조조정그룹 참여** 92
6. **원조조정그룹의 형태** 92
7. **원탁회의와 협의그룹** 94

<부록 Ⅱ> 원조조정 사례 99
1. **베트남** 99
2. **팔레스타인** 108
3. **東티모르** 118
4.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122

<부록 Ⅲ>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125
1. **개요** 125
2. **농업재건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125
3. **원탁회의** 126

<부록 Ⅳ>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130
1. **신탁기금의 목적** 130

2. **신탁기금의 종류** 130
3. **신탁기금의 수혜조건** 130
4. **신탁기금의 운영** 131
5. **운영절차** 131

<부록 Ⅴ> 유엔개발계획 134
1. **설립** 134
2. **활동목적** 134
3. **조직 형태** 134
4. **회원** 136
5. **사무국** 136
6. **재원조달** 136
7. **조직** 137
8. **재원할당** 138
9. UNDP **기금** 139
10. UNDG 141

참고문헌 142
ExecutiveSummary 150

표차례

<표 2-1> 남북한과 동서독 경제지표 비교 22
<표 2-2> 팔레스타인 신탁기금의 약정액 및 지급액 추이 38
<표 2-3> 홀스트 기금에 대한 자금공여국들의 출연금 40
<표 2-4> TATF에 대한 자금공여국들의 출연금 41
<표 2-5> 동티모르 신탁기금 재원현황 41
<표 2-6> 동티모르 신탁기금에 대한 자금공여국들의 현금지급액 42
<표 2-7> 동티모르 신탁기금 지원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42
<표 2-8> 북한의 외채 현황 50
<표 2-9> 북한의 채권자별 외채현황 51
<표 3-1> OECD DAC 회원국 및 다자간기관들의 순자금지원 추이 57
<표 3-2> DAC 회원국들의 개발지원 추이 58
<표 3-3> 공산권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자금지원 70
<표 3-4> 원조조정 사례로부터의 북한개발에 대한 시사점 74

부록 표차례

<표 Ⅰ-1> 원조조정회의 93
<표 Ⅰ-2> 원탁회의 대상국 95
<표 Ⅱ-1>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자금지원 105
<표 Ⅱ-2>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약정액 116
<표 Ⅱ-3>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제성장률 추이 118
<표 Ⅱ-4>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에서의 지원약정액 121
<표 Ⅲ-1> AREP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추정비용 127
<표 Ⅲ-2> AREP 프로그램 추정비용 128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에 개방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 오고 있다. 북한은 금년 들어 이미 브루나이, 이탈리아[1], 영국, 스페인, 호주, 필리핀[2]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대부분의 주요 서방국가와 가까운 시일 내에 국교를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반도에서는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연이어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 등 실무접촉이 잇달아 한반도의 사태진전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의 중요한 관문인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도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0년 10월 중순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전격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였고, 이어서 2000년 10월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하였다. 현재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

1) 북한의 대이탈리아 수교는 EU 15개 회원국 중 6번째(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이며, G7 국가로서는 최초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다. 북한은 이탈리아와의 수교로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남궁영(2000).

2) 북한은 2000년 12월 현재 미얀마를 제외한 ASEAN 10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의 경제침체로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경제 전반에 비효율성이 만연되어 있는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는 북한경제를 한국의 경제력만으로 회생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은 자명하다.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본격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가 최근 주요 관심사의 하나이다.

북한은 1990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한국도 지난 1997년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해 대북지원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개발을 통한 회생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함께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개발 지원자금의 재원조달 문제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연구는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북한경제 개발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현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헌은 많지 않으나, 사례분석 등을 위한 많은 문헌과 자료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였으며,

저자들이 과거 수행한 연구들 중 필요한 부분들에도 의존한 바 적지 않다. 국제협력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격상 국제정치 외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면의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저자들의 국제정치 외교에 관한 부족한 전문성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체의 추진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능성과 일부 상세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전부 담지 못한 면도 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한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및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칭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으로 명명되는 이 다자간 국제협력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서 제3장에서는 INKDAG의 필요성,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의 기본 골격, INKDAG 설립시의 장점,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반적인 원조조정그룹에 대한 개요 설명과 최근의 원조조정 사례를 다룬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이 북한이 국제금융계로부터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 – for – equity swap) ” 방식을 통한 북한외채처리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3)]

1989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북한 경제의 계속된 침체로 인하여 남북한이 마치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착각이 한때 1990년대 초반의 분위기를 좌우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한 경제의 통합비용에 대한 추정이 당시 상당수의 국내외 경제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비용에 대한 추정결과는 최소 400억 달러에서 2조 2,400억 달러까지[4)]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5)] 이는 남북한 경제통합비용에 대한 정의와 범위(예컨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통합), 통합시기와 방법, 통합시점에서의 남북한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 통합 후 경제적 수렴의 목표수준, 이 목표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비용추정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6)] 그러나 통일비용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확실한 점은 통일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일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보다 먼저 경제통합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 이후 구동독에 대한 독일정부의 총지출은 매년 서독 GDP의 약 5 6%에 달해왔다.[7)]

---

3) 이 장의 내용은 장형수(2000), 장형수 · 박영곤(2000)에서 상당부분 다루어졌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들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4) Bae(1996); 조동호(1997).

5) 반면, 국방비 절감과 규모의 경제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도 존재한다.

6) Bae(1996).

7) 독일의 통일비용은 상당부분이 사회보장성격의 이전지출비용으로서 서독으로의 대량이

실제 독일에서는 통일 이전의 동독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과소평가했었기 때문에 처음 추정했던 통일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통일비용으로 지출되었다.[8] 독일의 경우를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우에 대한 참고기준으로 삼을 경우 먼저 독일과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독일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제력의 차이보다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표 2-1>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을 때인 1989년 동서독간 경제상황과

<표 2-1> 남북한(1996년)과 동서독(1989년) 경제지표 비교

	단 위	남 한 (A)	북 한 (B)	A / B	단 위	서 독 (C)	동 독 (D)	C / D
1. 인구	백만명	45.5	23.6	1.9	백만명	61.7	16.4	3.8
2. 명목GNP	십억달러	480.4	21.4	22.4	십억DM	2,260	230 – 300	9.8 – 7.5
3. 1인당GNP	달러	10,548	910	11.6	DM	36,629	14,024 – 18,293	2.6 – 2.0
4. 대외교역	십억달러	280.1	1.98	141.5	십억DM	1,074.9	82.25	13.1
수출	〃	129.7	0.73	177.7	〃	609.9	41.11	14.8
수입	〃	150.3	1.25	120.2	〃	465.0	41.14	11.3
교역/GNP	%	58.3	9.3	–	%	47.6	35.8 – 27.4	–
5. 외채	십억달러	104.5	12.0	8.7	십억달러	106.7	22.0	4.9
외채/GNP	%	21.7	56.1	–	%	4.7	9.6 – 7.3	–
외채/수출	%	80.6	1,643.8	–	%	17.5	53.5	–
6. 정부지출	억달러	97.1[1)]	19.0[1)]	5.1[1)]	십억달러	547.7	61.8	8.9
정부지출/GNP	%	20.2[1)]	88.8[1)]	–	%	24.2	26.9 – 20.6	–
7. 국방비	십억달러	5.1	14.3	0.4	십억달러	28.5	11.2	2.5
국방비/GNP	%	1.1	66.8	–	%	1.3	5.0 – 3.7	–

주: 1) 1995년 자료.

자료: Young, Soogil, Chang-Jae Lee and Hyoungsoo Zang, 1998, "Preparing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Policy Challenges to South Korea," in Marcus Noland (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nuary. Chapter 14, pp. 251-271에서재구성.

주사태를 막기 위한 서독정부의 이주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났던 것이다.

8) IMF(1990) 또한 독일통일의 중기적인 의미들을 저평가했었다.

1996년 남북한간의 경제지표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동독의 인구가 서독의 1/4수준인 반면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수준이었다. 동독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서독의 1/4 1/5 수준인 반면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은 남한의 1/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독일식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남한의 통일에 대한 부담이 서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독과는 달리 한국은 정부지출 삭감이나 조세증대를 통해 국내재원을 활용할 여력이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997년 조세수입은 이미 GDP의 20%를 상회하며 한국의 자본시장은 대량의 국채공급을 수용할 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이 통합비용을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부분 의존하였던 독일식 경제통합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우려와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북한 경제의 회생을 통한 장기적인 남북한 경제통합비용의 감소에 대한 관심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 의지를 밝히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학계에서도 북한 관련 국제협력이슈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경제침체로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경제전반에 비효율성이 만연되어 있는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는 북한경제를 한국의 경제력만으로 회생시키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계속되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비용 때문에 정부재정의 흑자기조마저도 힘들게 되었다. 이 결과 공공부문의 부채를 갚기 위한 국채이자 지급비용만도 이미 연간 GDP의 3 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

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국내재원조달은 현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며, 남한도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대북지원자금의 국내조달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9]

그러므로 해외자금조달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먼저 북한의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해외재원조달 가능성을 살펴보면,[10]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사회에서 새로운 상업차관을 공여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상업차관은 약 12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성 있는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진전되는 것이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외채지불을 정지하고 있는 나라는 단기무역신용 외에는 어떠한 비양허성 차관(예: 상업차관)도 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설혹 상업차관을 빌려주는 국가가 있어도 IMF 프로그램은 이의 도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다. 만약 비양허성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들 국제금융기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에는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업차관 도입, 외화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

---

9) 남북경협기금은 1991년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9,777억 원이 조성되어 이 중 2,700억 원을 무상지원, 2,592억 원(기업대출 5억 원, 경수로공사대금 2,587억 원)을 유상대출하였다. 2000년 5월말 현재 사용가능한 기금은 총 4,939억 원이다. 그러나 가용기금 중 1,8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나머지는 정기예금 통안자금, MMF 등에 투입되어 있으며, 경수로 자금으로 6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 실제 가용자금은 2,539억 원이다. 김영윤(2000), 13면.

10)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2000) 참조.

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상업차관을 빌려오고,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이에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방안을 제시하는 논거로서는 1983 1984년에 서독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당시 외환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독의 해외자금조달을 도운 예를 많이 들고 있다. 1980년대 초의 동독경제는 구동구권 경제의 선두주자였으며, 1980년대 초 당시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자체 신용으로도 국제금융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당시 동독경제는 일시적인 유동성위기(liquidity crisis)에 빠졌다고 국제금융계는 판단하였던 것이다. 근본적 경제위기(solvency crisis)에 빠져 있는 지금의 북한경제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다.[11]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북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내기업 및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상당한 가산금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대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가산금리는 낮아지겠지만, 이는 이제 살아나고 있는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국은 상업차관을 통한 대북 지원자금 조달 방식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경제계의 시각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국제자본의 논리는 냉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대형 투자사업에 활용되는 금융기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방식이 있다.[12] 이 기법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산, 사업주(sponsor)의 신용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즉,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토대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cash flow)을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하고 관련자산만을 담보로 취득하는 자금조달 기법이다. 이때 차입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sponsor)가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이다. 따라서

---

11)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2000) 참조.

12) 이하의 내용은 박훤일(1997)을 많이 참조하였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자금대여자인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회사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도 대부분 당해 프로젝트 수입이나 프로젝트 관련 자산에 국한된다. 이처럼 금융기관은 대여자금의 회수에 관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여에 대해 높은 이율을 요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신디케이트 구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아울러 현지정부 등의 보증 내지는 보장을 통한 위험분산을 추구한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도 아직은 북한에 대한 투자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같은 투자 위험이 매우 크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도상국에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13]가 함께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신인도를 높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이어야 현실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IFC에 가입한 연후에야 가능하다. 비회원국에 대한 IFC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는 아직 전례가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다. 현재 한국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grants) 또는 양허성(concessional) 자금지원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이 1953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재건에 필요한 수입의 대부분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했던 단계[14]에

---

13)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계은행그룹 내 설립된 이와 유사한 기구로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가 있다. 동 기구는 對개도국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위험들에 대한 보상을 보증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 Krueger and Ruttan(1989), p. 233.

아직 머물러 있다. 국제민간자본은 국제공적사회의 "승인(GO)" 사인이 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암시적인 승인 사인을 내는 곳이 바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으면 북한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국제민간자본 유치가 현재의 국제경제질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업차관을 비롯한 국제민간자본 조달이 장기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필수조건이다.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인정(endorsement)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제민간자금의 조달 가능성과 그 방식에 대한 연구,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혹시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한국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에 대한 상업베이스 차원의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경제 재건이 후진국 경제발전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의 경제여력을 벗어나는 지나친 부담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공존이 세계경제에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용분담을 강조하는 논리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15)]

가.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

북한에 대한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중 특히

15)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현황, 여건, 가입시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 · 이창재 · 박영곤(1998), 장형수(2000), 장형수 · 박영곤(2000) 참조.

국제금융기구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들 국제금융기구들은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효과 외에도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통계체제 확립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시 요구되는 각종 제도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16] 북한내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다면 IMF로부터는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PRG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자금을,[17] 세계은행으로부터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을[18]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아시아개발기금(ADF: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19]등 양허성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은 무상지원

---

1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은 아직 없다. 북한은 현재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과 1997년부터 있어왔던 북한관리 파견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과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17) PRGF는 저소득 회원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가 양허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1996년 기준으로 1인당 GNP가 925달러 이하의 최빈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의하면 1998년 북한의 1인당 GDP는 573달러로 북한이 IMF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PRGF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IDA 자금은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연리 약 7 8% 수준인 IBRD 융자와는 달리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며 다만 0.5 1%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 40년이다. IDA 자금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대비 약 80% 정도의 무상지원효과(grant equivalents)가 있다. IDA 자금도 IMF의 PRGF와 같이 1996년 기준으로 1인당 GNP가 925달러 이하의 최빈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19) ADF 자금은 IDA 자금과 유사한 양허성 자금지원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없고 다만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 40년이다. ADF자금은 수혜대상국을GDP, 채무상환능력 및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룹 A, B, C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체로 1인당 GNP가 1,618달러 이하인 그룹 A, B에 해당하는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환산율(grant element)이 80% 이상이고 최장 40년 정도에 걸친 분할상환 조건이다. 즉, 지원금의 80% 이상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기준으로 볼 때 무상 지원하는 것과 같으므로 경제가 어려운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현 국제경제질서 하에서는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에 북한이 표명했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의사를 2000년 여름에 재확인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도 이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도 2000년 5월 제33차 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ADB 가입 지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한편, IMF와 세계은행도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 2000년 6월 IMF 서울사무소장 David Coe는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북한이 요청할 경우, 미국, 일본, 한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James Wolfensohn 세계은행 총재도 2000년 4월 세계은행/IMF 합동 춘계 총회에서 북한이 요청한다면, 세계은행과 IMF의 정해진 지원원칙에 따라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내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에 대하여 국제금융기구 의사결정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반드시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은 아직 힘든 상황이다.[20]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2000년 10월 "국제테러에 대한

20)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무기와 방산물자 수출금지, ▶통상,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수출입은행 보증금지 ▶긴급식량 외 원조금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것을 천명하는[21] 등 북한이 향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 공화당이 2001년부터 집권하게 됨에 따라, 향후 미국 공화당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가입 후 의무[22]

1) 가입조건[23]

IMF의 가입조건은 IMF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따르면, 질서 있고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용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로서 매우 간단하다. IMF가입 희망국은 IMF 협정문에 의거한 가맹국의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세계은행의 가입조건은 IMF 회원국이면 된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의 경우, 아시아 역내국은 ESCAP의 가맹국과 UN 또는 UN 전문기구의 가맹국이면 된다.[24]

즉, 형식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에 북한이 가입하기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거나 시장경제제도를

차관 및 사업지원 표결시 미국대표 반대 등 4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21) 미국은 2000년 8월 평양에서 북한과 가진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회담에서 북한에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으로 테러반대 공개선언, 유엔테러방지협약 등 모든 테러 관련 국제조약 가입, 일본 적군파 출신 요도호 납치범 국외추방 등 3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남궁영(2000)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2000) 참조.

23)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1998) 참조.

24) 북한은 이미 UN과 ESCAP의 회원국이다

도입할 의사가 확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IMF 가입조건을 상당히 확대해석한 것이다. 1980년 중국이 IMF, 세계은행에 가입할 당시에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국가가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 이들과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북한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입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북한의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을 충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수도 있다.

2) 가입 후 의무

북한이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경제 전반에 대한 통계제출과 정책협의 관련 의무로 보인다.

(1) 통계제출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은 국제금융기구에 통계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들 국제금융기구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통계를 추산하여 국제사회에 제공할 책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이 자국의 통계를 추정해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산정 능력이 생길 때까지 상당기간 실질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국제금융기구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불충분한 통계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통계 미제출을 이유로 회원국이 강제로 축출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예로서, 구소련이 연방을 해체한 후 IMF에 가입하기 시작한 동구체제전환국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이들 국가를 방문한 IMF 출장팀의 주요 업무는 이들 국가의 실무 관리들에게 이자율, 중앙은행 계정, 통합재정수지(consolidated fiscal balance) 등 IMF가 필요로 하는 거시경제 통계 항목의 개념에 대한 기초 교육과 통계표 작성방법을 지도하는 것이었

다. 한편, 인적자원이 미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등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국제금융기구의 통계 관련 기술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제도의 미비 등으로 실제로는 정확한 경제상황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경우도 가입후 상당기간 동안은 이들 국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후의 '정확한' 통계 제출 부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북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2) 정책협의

IMF와 각 회원국은 IMF 협정문 제4조에 따른 정책협의(Article IV Consultations)를 통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조율하게 되어 있다. 정책협의시에 IMF는 정책권고(advice)의 형태를 통하여 회원국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책권고는IMF 협정문상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로부터 자금지원(예: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 자금-PRGF)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이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또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시에도 IMF 자금 지원조건만큼 까다롭지는 않지만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자금지원조건이 설정된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와의 정책협의의무 및 자금지원조건이 실질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의사를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반영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IMF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IMF 정책협의의 강도는 낮아질 수 있다. 예로서 에리트레아(Eritrea)는 1994년 IMF, 세계은행 가입 초기에 IMF와의 정책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은행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자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 받은 바 있다. 당시 IMF 측에서는 세계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IMF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적이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정책 관련 지원조건이 붙는 IMF의 PRGF 자금보다는 세계은행과ADB의 프로젝트 차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권고'강도가 약한 세계은행 또는 ADB의 사회부문 자금지원조건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IMF와 세계은행의 업무조율의 결과 IMF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조건에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판정하는 주체는 세계은행이므로 이 경우에도 IMF가 직접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보다 그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협의 및 자금지원조건을 통한 자금수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 국제금융기구 자금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검토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에는 인프라 건설 등 자금집행(disbursement)에 있어서 비교적 시일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차관(project loan)과 단기간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차관(program loan)이 있다. 프로젝트 차관이 완결되는 데는 5 7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속도가 느린 때문은 아니다. 한편 세계은행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경우 초기에 긴급경제복구차관(Emergency Recovery/Rehabilitation Credit)의 형태로 긴급한 수입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조기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혁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후 개혁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사전지원조건 없이(up – front loading) 미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기 프로그램차관을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인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계은행보다 지원속도 면에서 더 빠르다.

다음으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가능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회원

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국가별로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경우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로는 팔레스타인(West Bank and Gaza)을 들 수 있다. 국제사회는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으로 하여금 1993년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세계은행 비회원국인 팔레스타인에 2000년 6월말 현재까지 4억1,03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팔레스타인 인구가 280만 명에 불과한 반면[25] 북한 인구가 2,400만 명인 것을 감안하여 단순 비교할 경우,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금 설립 시에는 향후 5년간 약 35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간 자금지원액을 더하면 이 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세계은행이 참여한 팔레스타인 신탁기금 중 긴급경제회복을 위한 조기지원자금이 전체의 50% 이상이었다.

이러한 조기, 대규모 자금지원은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의사결정국(major stakeholders)이 수혜국의 개혁"의지"를 어떻게"평가"해주느냐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 즉, 그 평가에 있어서 국제정치, 외교적인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에 가입도 하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경우 그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고려되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국제정치, 외교적인 고려가 가능하다.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서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린 역사적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회담 이후 팔레스타인 신탁기금이 세계은행에 설립된 전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3. 북한 신탁기금 설립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

25) 요르단 서안과 가자지구의 인구는 동예루살렘지역을 제외하고 약 280만 명이다(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0 참조).

실이지만 과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국제정치 외교 관련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가 취임하게 되는 2001년 1월부터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떤 색채를 띄게 될 것인지는 미리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비록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히려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차원에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연시킬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나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을 실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해야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제사회에 먼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여러 방안 중 "북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북한 신탁기금은 일반적인 신탁기금[26]과는 달리 세계은행 비회원국에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지원국(donors)이 자금을 기탁하여 이를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탁기금과는 달리 "특별"신탁기금인 북한 신탁기금은 세계은행 자체의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대부분 기술지원에 치중하는 일반적인 신탁기금과는 달리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명칭만 '신탁기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이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금지원 조건도

26) 신탁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IV>를 참조하기 바란다.

IDA의 지원조건과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비회원국에 대한 신탁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사례를 소개한 뒤 북한 신탁기금 설립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 사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특별"신탁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은 이미 4차례의 전례가 있다. 이미 언급한 "팔레스타인 신탁기금(Trust Fund for Gaza and West Bank)"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및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팔레스타인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신탁기금 외에도 홀스트기금(Holst Fund)과 기술지원신탁기금(TATF: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외에도 동티모르, 보스니아, 코소보에 대한 지원사례도 있다.

1) 팔레스타인

(1) 팔레스타인 신탁기금(Trust Fund for Gaza and West Bank)

세계은행은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西岸(West Bank)[27]과 가자지구(Gaza Strip)[28]의 개발지원을 위해 1993년 10월 이익잉여금(surplus income)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출연하여 팔레스타인 신탁기금(Trust Fund for Gaza and West Bank)을 설립하였다[29]. 이는 팔레스타인이 회원국이 아니

---

27) 요르단강 서안(West Bank)은 이스라엘이 1967년 "the Six-Day War"에서 점령한 舊 요르단령이다.

28) 가자지구(Gaza Strip)는 팔레스타인 남서부에 위치한 해항으로 이스라엘이 1967년에 점령한 舊 이집트령이다.

었기 때문에 IDA 자금이나 IBRD 융자를 통해서는 개발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0년 6월 말 현재까지 세계은행의 이익잉여금으로부터 2억 9,040만 달러 그리고 여타 자금공여자들로부터 1억 1,995만 달러로 총 4억 1,035만 달러의 자금이 출연되었으며, 이중 2억 8,191만 달러가 18개의 개발프로젝트에 지급되었다(<표 2-2> 참조).

(2) 홀스트 기금(Johan Jorgen Holst Peace Fund)

1993년 12월 세계은행 주관하에 열린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첫 협의그룹(CG) 회의에서 자금공여자들은 팔레스타인 개발을 위한 초기 경상재정비용(start-up and recurrent costs)을 충당할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는 집권초기부터 정부기관들을 설립해야 했고 동시에 정부로서의 기능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자금공여자들은 일시적으로라도 초기 경상재정비용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1994년 1월 세계은행과 IMF의 준비로 초기 및 이행비용(start-up and transitional costs)에 대한 특별 자금공여자회의(special donors meetings)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은 1994년에서 1995년 동안 지원되어야 할 예산내역을 제시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공여자들은 홀스트 기금(Johan Jorgen Holst[30] Peace Fund)을 설립하였으며[31] 기금관리 및 운영은 세계은행이 맡았다. 홀스트 기금은 처음에는 단기적인 신탁기금 성격으로 8개 자금공여국이 1,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9) World Bank(1999a), p. 3.

30) 1993년 오솔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데 공헌을 한 노르웨이 외무상 Johan Jorgen Holst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기금이다.

31)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지원자금을 관리할 중앙은행이나 예산을 기획할 재정 및 경제부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역사상으로 볼 때 상당수의 자금공여자들이 초기 경상재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표 2-2> 팔레스타인 신탁기금의 약정액 및 지급액 추이
(2000년 6월 말 현재까지)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	세계은행 약정액	자금공여 자들의 협조융자	세계은행 지급액	자금공여 자들의 지급액	총지급액
Education and Health Rehabilitation Project	20.00	29.10	20.00	15.20	35.20
Municip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40.00	5.41	34.20	1.91	36.11
Gaza Water & Sanitation Services Project	25.00	0.00	21.85	0.00	21.85
Microenterprise Project	5.00	0.00	2.06	0.00	2.06
Housing Project	25.00	0.00	0.70	0.00	0.70
Legal Development Project	5.50	0.00	1.93	0.00	1.93
Palestinian Expatriat Professional Program	3.00	0.32	0.68	0.32	1.00
NGO Project	10.00	4.60	6.18	2.50	8.68
Gaza Industrial Estate	10.00	0.00	1.52	0.00	1.52
Bethlehem 2000 Project	25.00	2.91	15.84	2.45	18.28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I	8.00	0.00	2.73	0.00	2.73
Southern Area Water and Sanitation Improvement Project	21.00	0.00	2.56	0.00	2.56
Electric Sector Investment and Management Project	15.00	0.00	2.12	0.00	2.12
Health System Development Project	7.90	0.00	0.00	0.00	0.00
완료된 프로젝트					
Emergency Rehabilitation Project I	30.00	71.24	30.00	71.24	101.24
MIGA: Investment Guarantee Fund	10.00	0.00	10.00	0.00	10.00

<표 2-2> 계속

Emergency Rehabilitation Project II	20.00	3.57	20.00	3.53	23.53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	10.00	2.81	10.00	2.39	12.39
합계	**290.40**	**119.95**	**182.37**	**99.54**	**281.91**
여타 신탁기금					
Holst Fund	–	262.52	–	–	259.74
TATF	–	22.77	–	–	19.36
총계	–	**285.29**	–	–	**278.83**

자료: World Bank. 2000. "Building Blocks for the Future." *West Bank and Gaza Update*. August. p. 16.

2000년 6월 말 현재까지 26개 자금공여국으로부터 2억 6,920만 달러의 지원이 약정되었고, 이중 2억 5,900만 달러가 세계은행에 의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지급되었다 지급액 중 2억 1,300만 달러는 경상재정비용 지원에 사용되었고, 4,600만 달러는 고용창출프로그램(EGP: Employment Generation Program)[32]에 지원되었다[33]

(3) 기술지원신탁기금(TATF: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1993년 제1차 자금공여자 회의에서 개발복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정비를 위해 약 7,6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입안 및 거시경제적 및 부문별 정책이슈의 우선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배양해야 했고 이를 위한 자금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32) 고용창출프로그램(EGP)은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는 미숙련 및 반숙련공들에게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고용촉진 프로그램이다

33) World Bank(2000a), p. 14.

이에 세계은행은 팔레스타인의 전후복구를 위한 팔레스타인 정부기관들의 부문별 정책 및 프로그램 입안능력 제고와 제도적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10월 기술지원신탁기금(TATF)을 설립하였다. 동 기금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금공여자들의 지원자금을 통합하여 초기 경상재정비용을 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립당시 12개 자금공여국으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자금이 출연되었으며[34] 이후 2000년 6월 말 현재까지 2,277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약정되어 있고 그 중 1,936만 달러가 지급되었다[35].

<표 2-3> 홀스트 기금에 대한 자금공여국들의 출연금

(단위: 백만 달러)

자금공여국	출연금	자금공여국	출연금
호주	1.51	쿠웨이트	21.00
오스트리아	1.11	룩셈부르크	0.26
벨기에	0.64	네덜란드	24.17
브루나이	6.00	노르웨이	19.76
캐나다	10.87	카타르	2.50
덴마크	5.75	사우디아라비아	40.00
핀란드	0.76	스페인	2.65
프랑스	3.74	스웨덴	14.71
그리스	0.61	스위스	9.69
아이슬란드	0.07	아랍에미리트	15.00
아일랜드	0.84	영국	4.00
이스라엘	10.50	미국	39.90
이탈리아	14.42		
일본	18.50	합 계	**268.96**

자료: World Bank [Online]. Available: http://wbln0018.worldbank.org/mna/mena.nsf.

34) 대부분의 자금공여자들은 자금지원시 미리 용도를 지정하고 그 운용을 감독하는 'tied 자금'으로 지원하지만 TATF의 경우 'untied 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자금공여자들의 지원을 총괄적으로 통합하여 지원되어 효과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졌다.

35) World Bank, op. cit., p. 14.

<표 2-4> TATF에 대한 자금공여국들의 출연금

(단위: 백만 달러)

자금공여국	출연금	자금공여국	출연금
오스트리아	1.65	노르웨이	2.08
캐나다	1.08	스웨덴	1.66
덴마크	0.96	스위스	2.23
핀란드	1.05	영국	2.03
이탈리아	3.21	미국	1.00
일본	5.00		
네덜란드	1.03	합 계	**22.97**

자료: World Bank [Online]. Available: http://wbln0018.worldbank.org/mna/mena.nsf.

2) 東티모르

(1) 동티모르 신탁기금(TEFT: Trust Fund for East Timor)

동티모르 신탁기금(TEFT)은 1999년 12월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세계은행이 설립하였다. 동 기금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티모르의 도로, 항만, 운송, 관개, 통신, 전력 등 인프라시설확충과 보건, 교육, 농업,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개발 및 복구지원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다(<표 2-7> 참조). 2000년 10월 1일 현재까지 1억 6,644만 달러의 자금이 약정되어 있으며, 이 중 1,063만 달러(세계은행은 잉여금에서 1,000만 달러 지원)가 지급되었다(<표 2-5> 참조). 일본이 가장 많은 자금지원을 약정하였으며, 그 다음이 호주, 세계은행 순이다(<표 2-6> 참조).

<표 2-5> 동티모르 신탁기금 재원현황(2000년 10월 1일 현재)

(단위: 백만달러)

지원약정액	현금지급	지원표명액	지급액
166.44	48.69	80.39	10.625

자료: World Bank. 2000b. "Trust Fund for East Timor." *Update No. 3*. p. 1.

동 기금을 통해 자금공여국들은 개발프로젝트 입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감독에 참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티모르에 보내고 있다. 포르투갈은 교육, 보건, 인프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입안에 참여할 예정이며, 호주는 공동체개발, 농업, 인프라, 사회부문에 대한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본, 영국 등도 전문가파견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UNTAET와 논의할 예정이다.

<표 2-6> 동티모르 신탁기금에 대한 자금공여국들의 현금지급액

(단위: 백만 달러)

자금공여국	현금지급액	자금공여국	출연금
일본	14.1	핀란드	1.5
호주	10.9	노르웨이	1.0
세계은행	10.0	미국	0.5
포르투갈	5.0	IDA PCF	0.4
영국	3.0	뉴질랜드	0.3
일본 PCF	2.0	합 계	48.7

자료: World Bank. 2000b. "Trust Fund for East Timor." *Update No. 3.* p. 8.

<표 2-7> 동티모르 신탁기금 지원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단위: 백만달러)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표명액
공동체 재건	9.0
딜리(Dili) 공동체 고용촉진	0.5
중소기업 육성	4.8
교육	13.9
산업기반시설 재건	27.8
보건부문	12.7
농업재건 및 개발	6.8
관개사업	4.5
능력배양 및 인적자원 개발	0.4
합 계	80.4

자료: World Bank. 2000b. "Trust Fund for East Timor." *Update No. 3.* p. 8.

(2)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신탁기금(UNTAET: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Trust Fund)

UNTAET도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티모르 신탁기금(TEET)과는 달리 동티모르의 행정, 경찰, 사법제도의 재정비와 도시공무원의 훈련 등 모든 행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기금의 운영은 UNTAET가 담당하고 있으며,[36] 2000년 4월 11일 현재까지 약 3,200만 달러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37]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자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긴급복구작업을 위해 1996년 1월에 이익잉여금 1억 5,000만 달러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신탁기금(Trust Fund for Bosnia and Herzrgovina)"을 설립하였다. 동 기금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세계은행에 가입[38]하기 이전에 개발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계은행은 동 신탁기금의 1억 5,000만 달러 중 1억 2,500만 달러는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조건과 동일하게 양허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2,500만 달러는 무상공여로 지원하기로 하였다.[39] 현재 동 기금을 통해 세계은행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개발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 2월에 설립한 "긴급복구프로젝트(Emergency Recovery Project)"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40][41]

---

36) 세계은행은 동 기금의 재원조달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에서 세계은행은 동티모르의 개발복구만을 지원하며 여타 행정적인 지원사업은 UNTAET가 맡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37) UN[Online]. Available: http://www.un.org/peace/etimor/etimor.htm.

3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996년에 세계은행에 가입하였다.

39) Alcira Kreimer · Robert Muscat · Ann Elwan · Margaret Arnold(2000), p. 33.

4) 코소보

코소보(Kosovo)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이 1999년 11월 코소보의 경제재건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이익잉여금으로 "코소보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 for Kosovo)"을 조성한 바 있다. 동 기금은 경제지원을 위한 무상공여[42] 농업생산과 식량부족해결 지원, 코소보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규모의 민간기업 지원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2000년 회계연도에도 2,500 3,000만 달러의 2차 자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UNDP도 1999년 5월 11일 코소보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알바니아와 舊마케도니아유고슬라브공화국(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코소보 위기 신탁기금(Kosovs Crisis Trust Fund)"를 설립하였다. 동 기금은 UNDP로부터 2백만 달러를 그리고 주요 양자간 자금공여자들로부터 2백만 달러 상당량의 출연을 약정 받은 상태이다.[43]

나. 설립 가능성 검토 및 향후 전망

앞에서 살펴 본 "북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은 국제금융

---

40) 동 프로젝트의 지원부문은 제도정비 인프라건설, 사회부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추정비용은 1억6,000만 달러가 예상되는데 이중 4,500만 달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신탁기금으로부터 조달하였고 나머지는 EU, EBRD, 소로스 펀드, 캐나다,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 지원하였다.

41) World Bank. Press Release No. 96/ 41S.

42) 2000년 3월에 세계은행과 UNMIX(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in Kosovo)는 코소보에 대한 5백만달러의 경제지원 무상공여(Economic Assistance Grant)를 체결한 바 있다. World Bank. 2000. News Release No. 2000/ 250/ ECA. *World Bank And Unmik Sign Economic Assistance Grant For Kosovo* 참조.

43) UNDP[Online].Available: http:// www. undp. org / dpa / frontpagearchive/ may99/11may99/ kosovo. htm.

기구의 자금지원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역시 미국의 북한의 테러리스트 지원국 지정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5월 중순 세계은행 상임이사회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북한과 함께 미행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규정되어 7년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란이 2억3천만 달러의 세계은행 신규자금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44] 이는 "테러리스트 지원국" 북한에 대한 지원도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 하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태 전개이다.[45] 다만 이란은 이미 세계은행 회원국이라는 점이 비회원국인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다.

따라서 상황전개에 따라서 북한 신탁기금을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안으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는 북한 신탁기금보다는 다음 장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다자간 원조조정협의체 성격의 기구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최근 아태지역경제간 경제협력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NEADB: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의 필요성과 그 설립방안이 제시되고 있다.[46] 즉, 아시아개발은행이 세계은행과 병존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의 경제개발

---

44)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유럽 등의 적극 찬성으로 "테러리스트 지원국" 이란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것이다(Wall Street Journal, May 18, 2000).

45) 당시 상임이사회에서의 표결은 전체 24개국 중 찬성 21, 반대 1(미국), 기권 2(프랑스, 캐나다)의 압도적인 표차였다.

46)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남덕우(2000) 참조.

자금을 지원하듯이 중국 동북부, 연해주, 몽고,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역개발은행을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원래 이 안은 중국 동북부, 연해주 개발을 위한 제안이었으나 최근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조달의 한 통로로서 활용하자는 주장이 그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 안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안으로서는 북한 개발에 대한 지원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자간개발은행들의 일반 융자조건(IBRD의 경우 현재 연리 약 7 8%)은 북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득수준은, 세계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개발은행(예: IBRD, ADB)이 제공하는 정규차관을 받을 수 없고 세계은행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아시아개발은행의 ADF(Asian Development Fund) 자금지원 등 양허성 자금지원(soft-window loan)만 받을 수 있는 국가("IDA-only country")에 속한다.[47] 북한과 같은 저소득국에는 개발은행의 일반 융자를 공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즉, 이들 국가에 개발은행의 일반 융자를 공여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아니며, 만약 개발은행의 일반성 융자를 무리하게 공여한다면 지불불능(default)의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공여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1955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였으나 초기에는 IBRD로부터는 전혀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IBRD 융자조건이 상업베이스였기 때문에 당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감안하여 자금공여가 사실상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으로부터 무상 및 양허성 유상원조를 받고 있었으므로 차관도입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48] 한국이 국제

---

47) 세계은행은 IBRD와 IDA로 구성되어 있다. IBRD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직접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차입조건이 나쁜 개도국에 이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재공여한다.

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에 가입한 뒤인 1962년부터이다[49].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증대한 국제신인도를 바탕으로 1968년부터는 개발자금의 상당부분을 상업베이스인 세계은행의 IBRD 차관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주지하는 대로 IDA 자금은, 국제금융시장 금리 수준으로 제공되는 IBRD 차관과는 달리, 1인당 소득이 매우 낮은 국가에 주로 공여되고 있어서 당시 한국은 IDA 자금지원 외에는 상업베이스로 공여되는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대상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한의 소득수준이 바로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이 성공하기 위한 많은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처럼 트리플에이(AAA)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AAA 신용등급을 누리는 이유는 국제금융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불불능(default) 사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일본, EU 등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동북아개발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즉, 주요국이 인정하는 국제금융체제하의 개발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없다면 AAA 신용등급은 기대하기 힘들다. 동북아개발은행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상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참여국 수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위험회피 차원에서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최상급 신용등급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개발은행도 AAA의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야 하나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경우에는 "동북

48) 한국 재정경제원(1993), 213 – 214면.

49) 이때 1,400만 달러의 철도차관을 세계은행의 IDA로부터 처음 도입하였다

아개발은행"이 아니라 투자위험을 일정부분 보전(pooling) 하는데 그치는 "동북아투자펀드"의 성격을 띄게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높아가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논의 방향 중의 하나가 국제개발은행의 역할 축소라는 점이다. 국제개발은행은 민간 국제자본 시장의 지속적 발달로 인하여 그 존재 이유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국가(예: 중국)는 국제개발은행의 융자대상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예로서, 곧 집권하는 미국 공화당이 주축이 되어 2000년에 마련한 미국 의회의 Meltzer 위원회 보고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IBRD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貧困重債務國(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은 무상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50]

동북아개발은행이 성공적으로 설립되더라도 최대 수혜국은 중국 동북부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시베리아이며, 한국과 북한의 편익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대표적 국제개발은행인 세계은행의 IBR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관례를 따른다면, 한국, 대만 등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 때문에 융자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및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동북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융자시 민간기업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혜택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정 지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지역국가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의 전적으로 동북아 국가, 특히 한국이 책임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게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로서 양허성

---

50) 장형수 · 박영관(1999).

자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안은 양허성자금지원창구(soft-window)가 없으므로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개발은행이 북한에 대한 개발자금재원 마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세계은행의 IDA, ADB의 ADF와 같은 양허성자금지원창구(soft-window)의 설치가 동북아개발은행내 또는 별도 기구로서 추진되어야만 한다.[51]

현재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안은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북한에 대한 상업차관 지원 방안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북한의 외채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방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재원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과 석유파동 등 국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1974년부터 서방차관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52] 특히 1989년 구소련의 몰락 이후 북한은 심각한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인해 기존 외화채무 원리금을 거의 상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규 차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채문제의 전향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서독과 구 소련의 경우를 볼 때, 남북한 통일시 북한의 대외채무는 고스란히 한국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51) 한편 동북아개발은행 논의는 북한보다는 중국동북부, 러시아 연해주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북한 경제재건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희석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52) 자세한 내용은 강용진(1995)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 북한 외채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북한의 외채는 1998년 현재 12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표 2-8> 참조), 이 중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외채가 절반을 넘고 있다(<표 2-9> 참조). 북한 외채의 구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했던 구소련의 붕괴 직전인 1989년 말 기준으로는 북한의 총채무가 67.8억 달러였고, 이 중 서방권에 대한 채무가 27.4억 달러로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소련에 31.3억 달러(46.2%), 중국에 9억 달러(13.3%)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2000)에 의하면 1995년 현재 북한의 대외채무는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약 43억 달러, 중국에 약 22억 달러, 일본에 약 9억 달러, 111개 서방은행권에 대해 약 23.3억 달러, 기타 채무 약 20.8억 달러 등 모두 약 118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표 2-8> 북한의 외채 현황

(단위: 십억달러)

연 도	1975	1980	1986	1989	1992	1993	1994	1995	1996	1998
합 계	2.10	3.46	4.06	6.78	9.72	10.32	10.66	11.83	12.0	12.1

자료: KOTRA, 『북한투자실무』 각년호;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 결과』, 각년호.

이 중에서 구소련에 대한 채무는 대부분 루불화 채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달러 표시 채무액수는 루불화와 달러의 환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환산 환율이 채권 공여 계약 당시의 환율(약 0.6루불 對 1달러)이었다면 현재의 환율(27.9루불 대 1달러)[53]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총액은 현격한 격차를 보이게 될 것이다. 구소련의 채권 및

53) 2000년 12월 현재 기준. Bank of Russia[Online]. Available: http://www.cbr.ru/scripts/eng_daily.asp.

채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양받은 러시아는 이전의 루불화 채권에 대한 회수 방식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 외에도 구소련에 대한 채무를 진 많은 국가들이 이미 루불화 부채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표 2-9> 북한의 채권자별 외채현황(1989년 말 집계가능 외채 기준)

	외채(십억 달러)	비중(%)
OECD국	2.74	40.4
Morgan Grenfell	0.24	3.5
Anz Bank	0.64	9.4
일 본	0.53	7.8
프랑스	0.23	3.4
독 일	0.35	5.2
스웨덴	0.15	2.2
오스트리아	0.10	1.5
기 타	0.50	7.4
사회주의국가	4.04	59.6
舊소련	3.13	46.2
중 국	0.90	13.3
합 계	6.78	100.0

자료: Young, Lee and Zang (1998).

나. 파리클럽, 런던클럽을 통한 외채경감 협의

먼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들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重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쾰른이니셔티브 Köln Initiative)을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54] 이는 IMF와 세계은행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重채무국들의 외채를 자체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54) 장형수 · 박영관(1999);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1999).

적정수준 이하로 경감시켜 줌으로써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공식적인 외채경감을 받기 전에 북한의 외채 경감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방안 없이는 국제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신규 대북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파리클럽(Paris Club)[55] 및 런던클럽(London Club)을 통한 외채상환조건조정(debt rescheduling)과 외채경감(debt reductions)을 위한 다자간 협의(debt relief negotiation)를 "다자간 지원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외채탕감의 주요 국제협의체인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들 협의체에서의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채경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외채경감을 위해 국제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시키는 데는 북한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외채경감 협의와 더불어 좀 더 단기간에 가능한 북한 외채경감 방안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체 논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55)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경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 · 박영곤(1999) 참조.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 방안:“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설립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제시하고자 한다.[56]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원조조정그룹(aid coordination group)[57]의 한 형태로서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하는 準국제금융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원조조정(aid coordination)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자금공여자(donor)들의 원조를 수혜국 정부가 국가전체의 개발목표와 전략에 맞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58] 원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원창구가 다양하고 또한 각각의 지원단체나 자금공여자들의 지원원칙, 지원우선순위,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원효과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원조조정그룹은 이러한 수혜국의 원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로서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59]이

---

56) Chae and Zang(2000)을 참조하기 바란다.

57) 원조조정그룹에 대한 자세한 토의는 Hopkins(1998), Silva(1999), UNDP(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58) 원조는 원조기관(aid agencies)들에 의한 융자(loans), 양허성 원조(concessional aid),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을 일컫는다.

주로 운영하고 있다.

INKDAG의 참가범위는 주요 원조국 정부, UNDP 등 관련 유엔기구,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ADB, IMF 등), 非정부기구(NGO) 등 북한지원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이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 행정부의 북한의 테러리스트 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가 원조공여국(donors)과 자금을 공동 지원하여 설립하는 특별신탁기금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추진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좀 더 단시일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하더라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문제는 미국의 대북협상 전략상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01년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미국 의회도 그 영향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역시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행정부하에서보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본격적 대규모 자금지원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바, 북한 개발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잠정적인 북한 개발 지원 메커니즘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INKDAG에 대한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는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는 비금융지원 부문에 대한 참여만을 상정하고 있다.

2. INKDAG의 기본 골격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의 기본적인 골격은

59) UND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V> 참조.

원조조정그룹(aid coordination group)의 형태를 띄게 된다. INKDAG는 일반적인 원조조정그룹의 형태보다 추진주체, 참여범위 등에서 보다 유연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원조의 범위에 기술지원, 투자자문 등의 非금융적 요소를 많이 포함시킨 일종의“ 對북한지원 관련 종합 협의기구” 로서 準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원국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원조조정기구보다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NGO[60]의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지원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긴급구제(emergency relief)나 전후복구 (post – conflict rehabilitation) 등과 같은 부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기관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NGO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NGO를 통하여 개발지원을 하는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61] OECD는 NGO가 빈곤완화 및 복지증진 등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저개발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하므로NGO의 원조를 양자간원조, 다자간원조에 이어 제3의 원조로 간주하고 있어,[6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 대다수 회원국들은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NGO를 협력파트너로서 활용해 오고 있다.[63] UN에서도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Council) 및 산하위원회 회의에 NGO를 참여시켜 의제를 제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4]

---

60) NGO (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용어는 UN헌장 제71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비정부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NGO를 “ 민간자원단체(PVO :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로 불리고, 프랑스에서는“ 국제연대단체(ASI: Association de Solidarite Internationale) ”, 남미에서는“ 비정부개발단체(Non – 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 ”, 아프리카에서는 “ 자원개발단체(Voluntary Development Organization) ”로 각각 불리고 있다. 김혜경(1997), 2면.

61) OECD (1998a), pp. 3 – 4..

62) 한국국제협력단[Online]. Available: http:// www. koica.or. kr / ngo/ ko8sr 211. html.

63) OECD, op. cit., p. 5.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있어 NGO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NGO를 통한 개발지원이 공적원조를 통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빈곤계층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원조의 효과가 공적개발원조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원조에 비해 사업목적이 인도적이며,[65] 공적원조에서 주로 드러나고 있는 관료적인 성격이 적어 회원국들이 협력파트너로서 선호하고 있다.[66] 그리고 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공적원조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개발사안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혁신적이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67] 그리고 1990년 이후 국제사회의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분야가 단순히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의 차원을 넘어서 빈곤퇴치, 여성개발, 교육, 사회인프라 구축, 인적개발, 환경보전 등과 같은 '지속적인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역점을 두면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기득권과는 상관없이 NGO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되었다.[68]

최근 민간 개발자금 중 NGO의 자체조달을 통한 개발지원도 공적개발원조(ODA)의 10%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표 3-1> 참조). 또한 공공원조기관들이 NGO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NGO에 대한 보조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ODA중 1 2%를 차지하고 있지만,[69] 꾸

---

64) 김혜경, 앞의 책, 3면.

65) 공적원조의 대부분은 지원국의 이익이나 사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지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66) Chang(1999), p. 5

67) 이외에도 NGO의 역할의 증대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1990년대 들어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인 인종갈등, 피난민 유출, 내전 등을 해결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재정 및 인력 면에서 역부족인 UN이나 국제기구들이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의 NGO나 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NGO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들 수 있다.

68) Chang, op. cit., p. 6.

69) OECD(1996)에 따르면 NGO 활동의 소요비용과 NGO를 통한 자금지원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NGO를 통한 ODA 지원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OECD(1996a), p. 2.

<표 3-1> OECD DAC 회원국 및 다자간기관들의 순자금지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1990	1993	1997	1998	구성비(%)			
					1990	1993	1997	1998
1. 공적개발자금(ODF)	76.5	82.4	75.3	88.3	59.0	51.4	25.8	36.9
– 공적개발원조(ODA)(A)	**50.6**	**55.5**	**47.7**	**49.7**	**39.0**	**34.5**	**18.0**	**20.7**
양자간	37.2	39.4	32.4	35.1	28.7	24.2	11.4	14.7
다자간	13.4	16.1	15.3	14.5	10.3	10.2	6.6	6.1
– 공적원조(OA)	2.3	6.0	5.6	7.0	1.8	3.7	2.6	2.9
양자간	1.9	5.2	4.0	4.5	1.5	3.2	2.1	1.9
다자간	0.4	0.7	1.6	2.5	0.3	0.5	0.5	1.0
– 여타 공적개발자금	23.7	21.0	22.0	31.7	18.3	13.2	5.2	13.2
양자간	12.9	11.4	5.9	12.8	9.9	7.0	2.2	5.3
다자간	10.8	9.6	16.0	18.9	8.3	6.2	2.9	7.9
2. 수출신용 (Export Credits)	9.5	-3.0	4.8	4.0	7.3	-1.8	-1.6	1.7
3. 민간개발자금	**43.7**	**86.3**	**239.7**	**147.5**	**33.7**	**50.5**	**75.9**	**61.5**
– DAC의 직접투자	26.9	41.6	102.3	118.0	20.7	3.7	27.6	49.2
– 은행융자	6.1	4.8	12.0	-65.0	4.7	3.0	4.4	-27.1
– 채권융자	0.5	28.7	83.2	39.8	0.4	17.7	30.6	16.6
– 여타(지분투자포함)	5.1	5.5	37.0	49.1	3.9	2.6	11.0	20.5
– NGO의 무상공여(B)	5.1	5.7	5.2	5.6	3.9	3.5	2.2	2.2
B/A	**10.1**	**10.3**	**10.9**	**11.3**	**10.0**	**11.3**	**12.2**	**10.6**
순자금지원 총액	**129.7**	**165.7**	**319.7**	**239.8**	**100**	**100**	**100**	**100**

자료: OECD. *Development Co-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9 DAC Report.* 1999 Edition.

준히 이루어지고 있다(<표 3-2> 참조).

세계은행의 개도국들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서도NGO들이 참여해 오고 있다. 이 경우 세계은행이NGO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수혜국 정부로 하여금 개발 프로젝트의 운영에 NGO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은1973년 회계연도[70]에서 1997년

70) 세계은행의 회계연도는 전년도7월 1일부터 당해연도6월 30일까지이다

<표 3-2> DAC 회원국들의 개발지원 추이(지급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ODA(A)	NGO에 대한 정부보조(B)	B/A(%)	NGO 자체조달
1993	56,472	956	1.69	5,692
1994	59,156	973	1.64	6,046
1995	58,926	1,053	1.79	5,973
1996	55,438	1,010	1.82	5,568
1997	48,324	998	2.07	5,191
1998	51,888	1,037	2.00	5,375

자료: OECD. *Development Co-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Report.* 1995, 1996, 1997, 1998 & 1999 Edition.

회계연도기간 동안 총 954개의 개발프로젝트에NGO를 참여시켰다. 이는 25년 동안의 5,666개의 세계은행 개발 프로젝트의17%에 해당된다. 이러한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NGO의 참여는 최근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1989년에는 전체 프로젝트의 20%에서 1997년에는 46%의 프로젝트에 NGO가 참여해 왔다.[71]

공적원조개발 실행에 있어 NGO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과 "위임계약(Sub-contracts)"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72] 협조융자방식은NGO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NGO와 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matching grants"와 "block grants" 등의 형태가있다. matching grants방식은 NGO의 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에 있어 NGO가 자체재원으로 일정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고, block grants 방식은 정부가 여러 개의 개발사업에 대해 각 사업마다 NGO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들과 관련된 NGO들을 선정하여 각 NGO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조융자방식의 대부분은 matching grants방식으로 이루어진다.[73] 위임계약방식은

71) World Bank(1999b), p. 7.

72) 김혜경, 앞의 책, 9면; 조한범(1998), 50-51면.

개발사업에 대해 자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은 동 사업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NGO에 정부가 위임하는 방식이다 즉, 위임계약방식은 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NGO가 참여하는 형태이고, 협조융자방식은NGO의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이다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및 프로젝트사업은 참가자들의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특히 일본 및 유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INKDAG의 자금지원時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DA)에 다른 국가의 ODA 재원을 공동발주의 형태로 결부시키고, 이 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민간컨소시움을 참여시키면 다자간 민간투자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NKDAG가 국제공적자금과 민간투자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진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으나 한국기업과 공동 진출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EU 국가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interim) 협의체로서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세계은행의자금지원이가능해지면INKDAG를빠른시일내에 “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이는 INKDAG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가능할 때까지의 과도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 (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

73) Chang, op. cit., p. 12.

있다. 즉,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더라도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는 기존의 다자간 국제협의 메커니즘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이 북한 개발지원 초기에는 효율적이라는 논리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INKDAG를 주도한 국가의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3. INKDAG의 장점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의 장점은 일반적인 원조조정그룹의 장점[74]과 한국의 입장에서 본 이점을 포괄한다.

첫째, 양자간 지원보다 다자간 지원이 지원국(donors)과 수혜국(recipient country)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양자간 지원은 그 공과가 당사국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자간 채널을 통할 경우 그 부담이 분산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은 IMF 가입시의 엄격한 자료제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의 대표기관과는 일정 수준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통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습관화"시켜 국제금융기구 가입후의 상황에 북한을 쉽게 적응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식량지원 같은 단순한 소비성지원에 따른 "원조피로현상(donor fatigue)"을 방지하고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본격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3년 전부터 특히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이슈이다.

넷째, INKDAG는 한반도 관련국 간의 북한 지원에 따른 이해를 조정하는 잠정적인 틀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 본 INKDAG의 이점으로서는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

74) <부록 I> 참조.

통하여 부족한 국내 재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INKDAG를 통하여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지원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66년에 구성되어 1984년에 해체된 對한국경제협의체(IECOK: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Republic of Korea)의 설립 경위와 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IECOK는 세계은행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 대한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를 조정, 주선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정형화된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의 일종이었다. 즉, 세계은행에서는 IECOK를 “ 한국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for Republic of Korea) ”으로 부르고 있다. IECOK는 미국이 거의 담당해왔던 對韓 무상지원을 한일수교를 계기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對韓 지원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여야 하는 상황과 북한의 대일청구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IECOK가 당사국(한국)의 세계은행 가입 이후 세계은행의 협의그룹(CG) 활동의 일환으로서 구성되었다는 점과 당시 당사국(한국)이 개도국으로서는 드물게 자체 개발계획(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작성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다는 점이 현 북한의 상황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제4절에서는INKDAG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조정그룹 일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에 대한 UNDP의 원탁회의와 북한에 대한 원조조정을 연구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베트남,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에 대한 원조조정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한 UNDP 주도의 원탁회의는 현존하고 있는 북한 관련 원조조정회의라는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등의 사례는 세계은행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에 대한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을 결성했었다는 측면에서 INKDAG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사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사례이다.

이어서 제5절에서는 제4절에서의 토의를 기반으로INKDAG를 설립할 때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가. 원조조정그룹(Aid Coordination Group)[75]

1) 원조조정그룹

원조조정그룹은 수혜국 정부의 원조조정을 지원하는 다자간협의체로서 수혜국의 입장에서는 개발복구를 위한 재원조달창구 역할을 하며, 자금공여자 입장에서는 수혜국과의 정책협의채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조조정그룹의 운영은 수혜국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76] 수혜국 정부의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할 경우 세계은행이나UNDP 등 국제기구들이 수혜국의 원조조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Box 1> 참조). 원조조정그룹에서 개최하는 원조조정회의에서는 수혜국의 경제전반적인 상황과 개발복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들이 논의되고, 이에 대한 자금공여자와 수혜국간의 원조조정과 자금공여자들간의 원조조정이 이루어진다.[77]

원조조정그룹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지는 형태가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운영하는 원탁회의(Round Table)이다. 세계은행의 협의그룹(CG)은 1950년대부터 개도국의 원조조정을 지원해 왔으며, UNDP의 원탁회의(RT)는 1972년부터 원조조정을 지원해 왔다.[78] 1997년에서 1998년 초까지 15개월 동안에만도73개 이상의 협의

---

75) 원조조정그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부록 I>을 참조하기 바란다.
76) OECD(1992), pp. 8 9.
77) 수혜국내 개발기관들간의 원조조정도 현지원조조정회의 등에서 이루어진다.
78) 원조조정에 대한 세계은행과 UNDP간의 업무할당은 1986년에 결정된 "World

< Box 1> 원조조정그룹의 운영절차(세계은행의 경우)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원조조정그룹의 경우,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원조조정 지원을 세계은행에 요청해 올 경우 세계은행은 주요 자금공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 해당국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이를 운영할 실무자들의 능력, 지원효과 등을 고려한 후 원조조정그룹 설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조조정그룹을 설립하고 있다.

▶ 원조조정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여러 자금공여자들로부터 이미 상당량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도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원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해야 한다.
▶ 동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 지원하려는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이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세계은행이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원대상국에 대해 UNDP가 운영하는 원탁회의(Round Table)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원조조정그룹을 설립하게 되면 세계은행은 동 그룹 참가자들에게 지원관련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수혜국의 실행실적과 발전과정에 대해 자세히 정리, 분석한“ Country Economic Memorandum(CEM) ”을 제공하여 이를 검토하도록 한다. 세계은행은 또한 수혜국의 공공투자 및 지출 프로그램을 점검하는데 이러한 점검과 평가는 수혜국과 자금공여자간의 협의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수혜국의 경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여자들의 자금지원규모와 조달방식의 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점검과 평가가 이뤄졌으면 세계은행은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행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원조조정그룹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세계은행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가 표준화한 "Aid Indication Tables"를 원조조정그룹 참가자들에게 회람하여 작성하도록 하는데 Aid Indication Tables에는 자금공여자의 원조수혜국에 대한 현재까지의 원조실적(지원약정액 및 지급액)을 기록하고 향후 지원하려는 원조금액을 작성하도록 하여 회원국에 대한 향후 지원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이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의장국으로서 수혜국 정부와 협의하여 원조조정그룹 회의의 의제, 장소, 초청장 발행, 보도자료 작성 등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원조조정그룹 회의는 통상적으로 파리나 동경에서 개최하고 있다.

자료: World Bank. 1989a. "Aid Coordination Groups." *Operational Directive* 14. 30. Washington, D.C.

그룹(CG)과 원탁회의(RT)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원조조정회의는 수혜국보다는 대부분 제네바, 파리, 동경에서 개최되고 있다.[79]

2) 원탁회의(RT: Round Table)

원탁회의(RT)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수혜국 정부와 자금공여자들간에 개발전략과 재원조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조조정회의이다. 원탁회의는 UNDP하의 원조조정회의이지만 일반적으로 수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UNDP는 다만 수혜국 정부의 원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원탁회의는 통상적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원탁회의

Bank/UNDP Aid Coordination Cooperation Agreement"에서 제도화되었으며, 이후 1996년에 개정된 바 있다. 동 협약에서는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원조조정 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UNDP가 수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탁회의(RT)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의그룹(CG)과 원탁회의(RT)에 대한 선택권도 수혜국 정부에게 주어지며 세계은행과 UNDP는 수혜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79) OECD, op. cit., p. 12.

가 개최되기 이전에 부문별 또는 주제별 원탁회의가 선행되고 있다.[80] 1998년 10월 현재 36개국의 개발지원에 대한 원조조정이 원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지역과 태평양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표 I-2 > 참조).

3)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

협의그룹도 개도국의 개발지원을 위한 수혜국 정부와 자금공여자간의 원조조정회의로서 세계은행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원탁회의(RT)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을 대상으로 한다면, 협의그룹(CG)은 최빈개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잘 정비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81] 세계은행의 대다수 개도회원국들이 협의그룹을 통하여 원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협의그룹[82]을 통하여 원조조정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4) 원탁회의와 협의그룹의 비교[83]

원탁회의와 협의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조조정 주체의 차이점이다. 즉 원탁회의는 원조조정의 주체가 수혜국 정부이며 UNDP는 단지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협의그룹의 경우는 물론 수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되지만 원조조정의 주체는 세계은행이다. 의장국도 원탁회의의 경우는 수혜국 정부이지만 협의그룹의 경우는 세계은행이 맡고 있다.

또한 원조조정 회의에 제출되는 경제관련 서류준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협의그룹의 경우 회의에 제출되는 보고서나 서류들[84]이 세계은행에

---

80) 북한도 농업부문 개발지원을 위한 주제별 원탁회의가 1998년과 2000년에 개최된 바 있다 (< 부록 III > 참조).

81) UNDP (1999a), p. 12.

82) 대한국경제협의체(IECOK)

83) UNDP, op. cit.

84) CG회의에 필요한 서류는 Public Investment Program과 여타 경제분석(수혜국 정부

의해 준비되어지지만 이에 반해 원탁회의는UNDP에 의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혜국 정부나 외부로부터의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원탁회의에 제출되는 보고서나 서류들은 수혜국 정부가 UNDP나 외부 컨설턴트들의 기술적 자문을 얻어 보고서나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그룹의 경우에는 세계은행이 수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준비되어진다. 이는 곧 원탁회의 대상인 최빈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자국의 입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협의그룹 대상의 개도국들은 세계은행의 리더십에 이끌려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조정회의의 주체에 따라 원조조정회의에서의 입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개발지원을 위한 원조조정그룹 설립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협의그룹은 개도국의 거시경제 및 경제성장과 관련된 개발을 지원하고 원탁회의는 이보다 인적 및 사회부문과 관련된 개발부문에 보다 치중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도 차이점이다.

5) 원탁회의와 협의그룹의 개선방향

현재의 원탁회의와 협의그룹의 원조조정 과정에서의 개선점으로는 첫째, 민간단체나NGO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원조조정 회의는 수혜국 정부와 자금공여국 중부 등 공공부문의 참여만을 허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조조정의 본 목적인 원조의 효과적인 이용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NGO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개발효과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점차적으로 원조조정의 목적과 수혜국의 상황에 따라 참가자의 조건이나 회의 절차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 몇몇 원조조정회의(1997년 베트남에 대한 협의그룹회의)에서는 시민

가 준비), Country Economic Memorandum,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세계은행이 준비), Policy Framework Paper(국가, IMF, 세계은행이 준비) 등이다.

단체가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998년 파키스탄에 대한 ‘ 개발포럼(Development Forum) ’에서도 시민단체와 민간부문이 참석하였다[85]. 이와 관련하여 원조조정회의를 제네바나 파리보다는 수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제네바나 파리는 많은 참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물리적 및 지리적으로 편리한 장소이지만, 원조조정회의에서 수혜국 정부의 리더십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개발목적과 실행방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들인 수혜국 정부관리 및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1998년에 개최된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바누아투, 파키스탄에 대한“ in – country CG ” 회의는 수혜국에서 개최된 바 있다.[86]

둘째, 원탁회의나 협의그룹에 제출하는 경제관련 서류 및 보고서에서 수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탁회의와 같은 경우에는 UNDP의 지원으로 수혜국 정부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준비능력이 부족하여 외부 컨설턴트들이 대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수혜국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서류 및 보고서들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협의그룹의 경우에는 주로 세계은행에 의해 관련 서류 및 보고서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원탁회의보다 더욱 수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나 보고서 내용들이 수혜국 정부의 정책분석이나 계획 등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많은 원조조정회의에서 자금공여자들은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원조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우선지원사항을 지키지 않고 각자의 원칙과 이익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금공여자들의 일방적인 지원은 수혜국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수혜국에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조

---

85) World Bank(1998), p. 43.

86) Ibid., p. 43.

조정회의에서 수혜국 정부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자금공여자들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원조조정 사례[87]

1) 북한

북한의 개발지원을 위한 원조조정그룹의 예로서는 UNDP가 주도한 두 차례의 농업관련 원탁회의(Round Table)가 있었다. 1998년 5월과 2000년 6월 스위스의 제네바 식량원조국 회의가 그것이다(UNDP, 1998). 이는 북한이 단순한 식량원조가 아닌 개발원조를 국제사회에 요청한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그 의미가 컸다. 이 원조조정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EU를 중심으로 주요 원조국들이 북한에 대해 향후 계속적인 서방선진국들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발전계획'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UNDP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발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제네바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였으나 제출자료의 비현실성으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UNDP에 따르면 2000년 1월 현재 약 1억 달러의 원조약속을 받고 그 중 8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는 양자간 원조를 합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과장되어있다.

2) 베트남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88] 개혁노선을 통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하며, 1989년 캄보디아 주둔군을 철수함에 따라 선진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의

---

87) 북한의 원조조정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III>을 참조하고, 베트남, 동티모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원조조정사례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부록II>를 참조하기 바란다.

88) 베트남어로 刷新이라는 뜻이다.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89] 1993년 이후부터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90] 이와 같이 베트남이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실행하기 이전에는 현재 북한의 상황과 같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로 인해 서방선진국이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공산권국가로부터의 원조만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유일한 지원이었다(<표 3-3> 참조).[91]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협의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1993년 11월에 국제자금공여자회의(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를 개최하여 베트남 개발지원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자금공여자간의 원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의 개발지원을 위한 원조조정은 세계은행의 협의그룹(CG)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92] 원조조정은 협의그룹 외에도 반기별 및 월별로 개최되는 자금공여자회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발활동의 실무자이지만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협의그룹에 참여하지 못한 정부관리 및 현지인사들의 원조조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켜 보다 효과적인 원조조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

89) 1991년에서 1995년동안 베트남에 지원된 공적개발원조(ODA)의 절반이상이 무상공여로 지원되었다. UNDP(1998a), p. 29.

90)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나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신용(SAC: Structural Adjustment Credit)자금은 융자의 형태로 지원되었으나 80%가 양허성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20%는 무상공여로 지원되었다. Ibid., p. 29.

91) 동구 공산권국가들로부터의 원조는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92) 베트남 정부가 1993년 국제자금공여자회의에서 향후 원조조정은 세계은행 주관의 협의그룹을 통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표 3-3> 공산권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자금지원

(단위: 백만달러)

연도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	라오스	몽골
1954-87	1,421	12,210	685	50,374	638	13,013
1980	260	935	0	3,243	57	835
1981	145	1,120	81	4,151	49	830
1982	130	1,001	70	4,772	86	885
1983	41	1,040	86	4,901	100	886
1984	55	1,040	87	5,153	77	785
1985	93	1,160	98	5,300	100	918
1986	6	1,325	128	3,280	74	905
1987	-33	1,575	134	3,735	94	991
1988	-41	1,365	137	3,270	86	987
1989	-16	1,110	159	3,720	75	995
1990	0	585	110	3,955	70	965

자료: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9, p. 178; 1990, p. 184; 1991, p. 160.

3) 팔레스타인(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영토 및 주권분쟁으로 오랜 기간동안 분쟁지역으로 남아있었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는1993년 9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본격화되었다.국제사회는 동 지역에 대해 양자간 자금지원뿐 아니라 신탁기금 설립을 통해서도 개발복구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93] 특히“ 팔레스타인 신탁기금”은 팔레스타인이 아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은행이 설립한 것으로 북한의 경우에도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 설립을 통해 개발복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약 50여개 이상의 양자간 및 다자간 자금공여자들이 요

93) 이러한 신탁기금에는 팔레스타인 신탁기금 홀스트 기금, 기술지원 신탁기금 등이 있다(제2장 3절 참조).

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개발복구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들 수많은 자금공여자들로부터의 원조에 대한 관리와 조정은 "3자간 활동계획(Tripartite Action Plan)"[94]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Palestinian Authority), 이스라엘 정부, 국제자금공여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는 1993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당시 동 지역의 역사적 및 지리적인 배경으로 인해 특정한 원조조정의 주도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국제자금공여자들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조조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자금공여자들은 원조조정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3자간 활동계획을 통해 공동으로 원조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원조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남한, 여타 국제금융기구들을 비롯한 자금공여자들이 단독적으로 원조조정을 선도할 수 없을 경우 한국과 북한,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여타 국제금융기구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원조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원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주요 원조조정회의로는 잠정연락위원회(Ad-Hoc Liaison Committee)와 협의그룹(CG)과 같은 정기적인 원조조정 회의와 합동연락위원회(Joint Liaison Committee), 현지원조조정위원회(Local Aid Coordination Committee)와 부문별실무반(Sector Working Groups)과 같은 다양한 원조조정 위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UN도 "UNSCO(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Coordinator in the Occupied Territories)"를 통해 요르단강서안과가자지구에대한UN 산하기구들의원조조정을지원하고있다.

---

94) <Box III> 참조.

4) 東티모르(East Timor)

동티모르는 1999년 8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시작된 내전으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산업시설도 피폐화 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시작되었고 1999년 12월에는 일본정부의 주최로 동경 자금공여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약 5억2,000만 달러 정도가 국제자금공여자들로부터 지원약속되었다. 특히 동 회의를 통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운영하는 "동티모르 신탁기금(TEFT: Trust Fund for East Timor)"[95]과 UN이 운영하는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신탁기금(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Trust Fund)"[96]이 설립되어 동티모르의 개발사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97]

동티모르에 대한 원조조정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자금공여자단체(비정부기관(NGO)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원조조정 협의체로는 "자금공여자 조정위원회(Donor Steering Committee)"와 "자금공여자 조정단(Donor Co-ordination Unit)"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부문별 위원회(Sectoral Committees)" 등이 있다.

5)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rgovina)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공화국의 경우도 동티모르와 같이 1992년 3월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이후 내전으로 인해 국내경제가 극도로 침체되고 산업시설이 피폐화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세계은행은 1994년 동 지역의 개발복구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첫 자금공여자회의를 개최하여 총 6억 달러의 자금을 자금공여자들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았다. 이후

---

95) 도로, 항만, 관개, 통신, 전력 등 인프라시설 확충과 보건, 교육, 농업 등 개발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다.

96) 행정, 사법제도 재정비 등 행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97) 제2장 3절 참조.

에도 1996년과 1997년의 자금공여자회의를 통해 개발복구를 위한 자금지원이 이어졌으며 또한 여러 형태의 지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양자간 자금지원 외에도 세계은행은1996년 1월 이익잉여금1억5,000만 달러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신탁기금(Trust Fund for Bosnia and Herzrgovina) ”을 설립하여 개발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였다[98] 동 신탁기금도“ 팔레스타인 신탁기금”과 같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의 개발복구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이 설립한 경우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 설립 가능성을 높여 주는 사례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원조조정은 세계은행과EU 집행위위원회(EC)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원조조정 협의체로는“ 부문별 특별작업반(Sector Task Force) ”이 있다.

6) 북한 개발 지원에 대한 시사점

베트남,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등에서의 개발복구 과정과 원조조정이 현재의 북한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와 같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전이라도 신탁기금 설립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개발 지원의 원조조정에 있어서도 팔레스타인과 같이 특정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북한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공동으로 원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표 3–4> 참조).

98) 제2장 3절 참조.

<표 3-4> 원조조정 사례로부터의 북한개발에 대한 시사점

사례국	원조조정 및 개발지원	평가 및 시사점
베트남	- 1986년 '도이모이' 개혁노선 채택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캄보디아에 주둔한 베트남군을 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음 ·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를 관리하고 조정할 협의체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1993년 11월 국제자금공여자회의가 개최되어 자금공여자들의 베트남에 대한 개발지원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세계은행의 협의그룹(CG) 회의를 중심으로 원조조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 연례적으로 개최되는CG회의 외에도 베트남 정부와 UNDP가 운영하는 반기별 점검회의와 월별 자금공여자회의를 통해서도 원조조정이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발작업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CG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정부관리들이나 관련인사들이 참여하여 보다 실질적인원조조정회의가이루어지고있음.	- 베트남의 개혁과정이 북한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계획경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했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캄보디아 주둔군 철수와 함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 재개되고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도 해제된 것은 북한이 향후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CG와 같은 회의 외에도 베트남과 같이 반기별 및 월별이나 사안별 및 부문별로 원조조정회의를 개최해야될 것임.
팔레스타인	- 1993년 9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작되었음 · 동 지역에서는 "3자간 활동계획(Tripartite Action Plan)"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이스라엘 정부, 국제자금공여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원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우 영토 및 주권분쟁으로 인해 원조조정에 대한 특정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제자금공여자들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여러움으로 인해 원조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었음

사례국	원조조정 및 개발지원	평가 및 시사점
팔레스타인	각자의 원조조정에 대한 책임도 분담하고 있음. · 주요 원조조정 협의체로는 잠정연락위원회(AHLC)와 협의그룹(CG)과 같은 정기적인 원조조정 회의와 합동연락위원회(JLC), 현지원조조정위원회(LACC), 부문별 실무반(SWGs) 등이 있음. UN은 UNSCO로 하여금 동 지역에 대한 UN시스템내의 모든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의 개발복구를 위해 양자간 자금지원 외에도 초기 경상재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술지원신탁기금(TATF)과 홀스트기금을 설립하였고 또한 세계은행 및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아닌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신탁기금 ” 설립을통해개발자금을조달하였음	· 이에 “ 3자간 활동계획 ”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원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이례적인 원조조정이 이루어졌음. 북한의 경우도 향후 개발지원에 대한 원조조정시 남북한과 세계은행 등 여타자금공여단체가 공동으로 원조조정을 주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팔레스타인 신탁기금 ” 설립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신탁기금의 설립이가능할수있음을시사함
동티모르	– 1999년 8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시작된 내전으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고 산업시설이 피폐화되었음. 이에 일본정부가 1999년 12월에 동티모르에 대한 개발자원을 위한 자금공여가 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를 통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 동티모르 신탁기금 ”과 UN이 운영하는“ UNTAET 신탁기금 ”이 설립되어 동티모르의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주요 원조조정 협의체로는 자금공여자 조정위원회, 자금공여자 조정단, 부문별 위원회가 있음.	– 동티모르의 경우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의 설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이 북한보다 일본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훨씬 떨어지는 동티모르의 개발복구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동티모의 경우가 북한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의 북한개발지원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예: ADB의 최대출자국인 일본이 북한의 ADB 가입을 지지한다거나, ADB가 운영하는 북한 개발 신탁기금을설립할수도있을것임).

사례국	원조조정 및 개발지원	평가 및 시사점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동티모르의 경우와 같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도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이후 내전으로 산업시설이 피폐화되었고 이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시작됨 · 이에 대한 원조조정은 세계은행과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세계은행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신탁기금 "을 설립하여 개발복구를 지원하였음	– 세계은행의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신탁기금 " 설립을 통해서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 상황에서 신탁기금 설립을 통해 개발지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가. 추진주체

추진주체에 관한 검토는 INKDAG의 성격을 규정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INKDAG의 추진주체[99]는 한국정부 또는 한 · 미 · 일 정책협의회(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가 맡는 방안과 UNDP, 세계은행 또는 ADB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 APEC에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정하여 APEC이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APEC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들의 참여가 미진할 가능성이 있다.

99) 추진주체는 반드시 INKDAG를 실질적으로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추진주체는 한국정부가 포함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정부가INKDAG를 행정적인 면에서 주도해나가야 하는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1966년 설립된 IECOK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정부가 추진하였지만 행정적인 형태는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UNDP 중심의 기존의 대북한 원조조정회의[100]를 확대, 개편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INKDAG의 전면에 내세울 국제기관이UNDP,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 어느 기관이 유리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UNDP[101]의 경우는 기존의 대북한 원조조정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UNDP 현지사무소가 평양에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연락을 담당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국제기관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식적으로나마 원탁회의(RT) 방식이 협의그룹 방식보다 수혜국(즉, 북한)의 원조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높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UNDP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의 단점도 많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대북한 원조조정회의가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102]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UNDP 주도의 원조조정그룹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UNDP의 인적 및 물적자원 동원능력이다. 원탁회의(RT)의 성격상 UNDP 자체 인력보다는 외부 컨설턴트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UNDP 자체 인력의 부족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UNDP의 인적자원은 본격적인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행정적으로 이끌어나가기에는 약간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103] 물적자원 측면에서도UNDP 자체의 지원금 규

---

100) <부록 III> 참조.

101) <부록 V> 참조.

102) 제3장 4절 북한에 대한 원조조정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103) 예로서 현재 UNDP 평양사무소의 소장은 인도적 원조 관련 업무에 경험은 있으나 개

모는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개발은행에 비해서 상당한 약세에 있다. 따라서 대북한 원조조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UNDP 보다는 세계은행 등 개발은행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P는 INKDAG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 해야함은 물론이다.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협의그룹 형태를 INKDAG의 벤치마크로 삼는 경우에 아시아개발은행의 참여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티모르의 경우는 원조조정그룹을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주관하고 있다.[104] 이런 경우에 만약 INKDAG의 행정사무국을 둔다면 이를 세계은행 ADB 어느 쪽에 둘 것 인가도 검토 사항이다.

추진주체를 비롯한 여타 고려사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기보다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KEDO와의 관계 설정

INKDAG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서는 INKDAG와 기존 KEDO와의 관계 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은KEDO의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해왔었다. 즉, 건설 후에도 실제로 전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배전설비 등 상당한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경수로를 건설하기보다는 그 재원으로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수로발전소 건설보다는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조기에 북한의 전력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는 KEDO를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구성과 관련시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될

발원조 분야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104) <부록 II> 동티모르의 원조조정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수 있다. 세계은행과 같은 독립적인 제3자가 북한 에너지분야 연구 (National Energy Survey)를 통하여 북한 에너지 수요 예측 등의 토대 위에서 경수로 자금의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제안을 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105]

본 연구의 관점은 KEDO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최초의 프로젝트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KEDO가 어떤 형태로던 독립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INKDAG를 설립하는 경우, 미국, 세계은행 등의 주장을 감안해야 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한국이 추가적인 자금지원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KEDO 관련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의 구성 비중

또한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의 지원방식 중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과 자금지원의 비중을 시기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DP 등 국제기구가 초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기술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반면 북한은 조기, 대규모 자금지원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지원신탁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원은 양자간 베이스로 공여하고 INKDAG에서는 다자간 조정만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외채출자전환(debt – for – equity swap) 방식에 의한 북한 외채경감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비정부기구

105) 또한 경수로 건설후 생산한 전기를 남한에 판매한 수익금으로 북한경제개발 프로젝트의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NGO)를 활용하여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에 의한 외채경감이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에서 프로젝트를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성공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는 국제사회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NGO를 통한 외채출자전환방식이다. 그 이유는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수혜국, 즉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무리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구체적인 예로서 외채출자전환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북한의 외채 중 일부는 국제채권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액면가 대비 약 90% 95%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금융센터(2000)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채무 중 4개 채권단 111개 서방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23.3억 달러의 채권 중 약 8.5억 달러 어치(액면가 기준)가 북한의 상환거부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국제채권유통시장에서 할인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채권의 할인 가격은 1997년 한때는 원금의 50 55% 수준에서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 4월초에는 1달러당 6 8센트, 2000년 5월말에는 9.75 10센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쿠바, 에티오피아 등의 상환거부채권과 비슷한 가격이다. 즉, 국제금융계가 인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신용위험이 이들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06] 다시 말하면, 1억불의 외채에 대한 청구권리가 천

106) 참고로 베트남에 대한 채권은 2000년 5월 현재 약 50센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만 달러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채탕감을 위한 비용은 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먼저 원조국 또는 원조기구가 천만 달러를 조성하여 국제유통시장에서 북한 채권을 구입하여 이를 NGO에 기부한다. 기부를 받은 NGO는 이 채권을 북한에 제시하고 이에 상당하는 북한 내의 자산(assets)을 지급 받아 이 자금으로 북한에서 개발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출자전환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NGO는 5백만 달러에 상응하는 북한내 자산을 조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1억불의 외화표시채무를5백만 달러에 상응하는 국내채무로 전환하게 되어 외화 없이 외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INKDAG의 틀 안에서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외채출자전환을 위한 유통시장에서의 채권매입이 시장에 알려지는 경우 채권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07]

마. 예상되는 주요국의 입장

마지막으로 이 방안에 대한 주요국의 예상되는 입장을 살펴보자. 먼저 중국, 러시아, EU, APEC 국가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INKDAG에 참여하는 자금공여국들은 북한 개발 지원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향후 북한 진출에 대한“ 기득권 ”을 확보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INKDAG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일관계 개선이 가시화 되고 수교의 쟁점이 되고 있는 대일배상금 액수가 타결되어 일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면, 중국은 그 동안 중

107)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Zang(2000) 참조.

국이 북한에 대해서 누렸던 정치,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약해짐을 느낄 것이다. 특히 경제면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감을 느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협의체의 일원이 아닌 중국은 INKDAG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시나리오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북일 수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미사일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면 북일 수교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의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대북배상금 액수이다. 공식적으로 액수가 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과 일본이 제시하는 배상금액의 차이는 최소 50억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규모와 개도국지원 예산규모를 볼 때 이는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다. 다만 한국과의 전례와 일본 여론 때문에 공식적인 배상금을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이 제시하는 공식 배상금 수준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는 일본의 양자간 대북배상금 지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북한이 일본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다자간 채널을 통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다자간 채널이 바로 INKDAG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규정하여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자금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당황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자금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이 안을 비록 적극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방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국내법 등 미국 의회 내의 대북 강경 여론에 밀려서 대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미국 행정부의 대내적 명분을 세워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제4장 결론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남북한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어느 한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이 겪었던 개발과정을 거쳐갈 것이다. 개발 초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국제금융기구의 기술 및 자금지원 하에 필요에 따라 국제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개발 초기에는 무상지원 또는 양허성 자금지원 등 국제공적자금이 투입되며, 상업베이스에 의한 재원조달은 국제공적부문의 개발 성과가 일정부분 나타나고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108]

북한에 대한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과제 중 특히 국제금융기구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국제금융기구들은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효과 외에도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진

---

108) 장형수(2000).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국제정치 외교 관련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비록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차원에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연시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나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을 실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해야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제사회에 먼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한국의 주관심사인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은 양허성 자금지원 확보에 달려있으므로 양허성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설립을 제시하였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원조조정그룹(aid coordination group)의 한 형태로서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하는 準국제금융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INKDAG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양자간 지원보다 다자간 지원이 지원국과 수혜국의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둘째, 북한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식량지원 같은 단순한 소비성지원에 따른 "원조피로현상(donor fatigue)"을 방지하고 개발원조를 본격화할 수 있으며, 넷째, 한반도 관련국 간의 북한 지원에 따른 이해를 조정하는 잠정적 틀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 본 INKDAG의 이점으로서는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통하여 부족한 국내 재

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INKDAG를 통하여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지원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이 북한이 국제금융계로부터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북한이 요청하는 경우에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한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를 시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이와 병행하여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에 의한 외채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에서 프로젝트를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성공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는 국제사회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NGO를 통한 외채출자전환 방식이다. 그 이유는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수혜국, 즉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외채경감 방식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 진행 속도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큰 흐름을 한국이 순탄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변화는 한국의 경제외교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조만간 한번은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지금 당장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INKDAG와 같은 성격의 다자간 메카니즘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이 INKDAG를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그룹 하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담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이슈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을 모색하는 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슈는 그 특성상 경제분야만이 아니라 외교,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경험 있는 관료들의 기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태스크포스는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절히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4년 한반도 核위기 당시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한반도 주변의 이해당사국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1. 원조조정그룹의 역할

원조조정그룹(Aid Coordination Group)은 수혜국 정부의 원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원조조정그룹들은 수혜국 입장에서는 개발복구를 위한 주요한 재원조달창구가 될 것이며, 또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독으로 수많은 자금공여자들에게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외교적인 수완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금공여자 입장에서 보면 원조조정그룹이 단순히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협의체일 수 있지만, 원조조정그룹이 수혜국과의 정책협의채널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원조조정그룹의 운영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109]의 원조조정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원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수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Box I> 참조).[110] 그러나 수혜국 정부가 원

---

109)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전신인 개발원조그룹(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이 1961년 9월 30일 단행된 OEEC의 OECD로의 조직개편과 함께 개칭된 것으로, 현재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代 위원회의 하나이다. DAC는 ▶저개발국 원조의 양적 확대와 효율화 도모 ▶원조금액과 성격에 대한 정기협의 공정한 분담기준 조정 ▶각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권고 ▶기근 근절 ▶여성 지위 보장(Gender Equality) ▶환경 보호(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안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Stable, Safe and Just Societies)을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다.

110) World Bank(1989b); OECD(1992).

조조정을 수행할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금공여자나 관련국제기구들이 원조조정그룹을 구성하여 수혜국 정부를 대신하여 원조조정을 수행하거나 수혜국 정부의 원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조정 지원은 주로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111]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개발은행들이나 양자간 자금공여국 등도 세계은행이나UNDP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개도국의 원조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원조조정그룹들은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조정에 대한 원칙에 따라 원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112]

3. 원조조정그룹의 지원

원조조정그룹은 수혜국이 자금공여자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113] 즉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 유치방안 개발, 지원자금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입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조조정 회의를 통해 수혜국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활동을 결정한다 원조조정 회의에서는 경제 및 교역

---

111) <부록 Ⅴ> 참조.

112) 세계은행도 원조조정그룹의 의장국으로 지원활동시DAC의 원조조정 지침을 따르고 있다.

113) 세계은행의 운영지침(World Bank, 1989)에서는 원조조정그룹이 다음사항들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개발지원분야와 이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수혜국과 자금공여자들의 포괄적인 이해와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고, 둘째, 정부의 전체적인 목적, 전략, 정책 프레임워크, 특정부문에 대한 접근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공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셋째, 자금공여자들이 수혜국에게 자금활용, 개발프로그램, 투자, 정책, 제도 등에 대해 자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넷째, 수혜국과 자금공여자들이 투자, 정책, 제도적 개선과 자금지원 규모 및 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수혜국 정부의 정책 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섯째, 자금공여자들간의 지원을 조정하여 지원창구를 단순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하여 수혜국 스탭들의 시간과 인적자원의 부담을 줄이고 노력의 중복을 회피하도록 한다.

< Box I > 원조조정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지침

OECD의 DAC는 1986년 효과적인원조조정을위한다음원칙들을채택하였다

- ▶ 원조조정의 주도적인 역할은 수혜국 정부(recipient government)가 담당한다
- ▶ 개발도상국(수혜국)은 국내 및 국외로부터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잘 정비된 정책과 투자 및 지출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
- ▶ 원조기관들(aid agencies)은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분석적인 능력과 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수혜국과 자금공여자(donors)는 효과적인 원조조정을 위한 기초로서 생산적인 투자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 수혜국정부와 다자간지원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간자금공여자도 정책 및 프로그램협의의 논의과정에서 그들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과 이용을 위해 자금공여자간 그리고 자금공여자와 수혜국간에 원조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충실하고 숨김없는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원조조정은 현지차원(local level, 예: 수혜국의 수도)에서도 강화되어야 하고, 주도적인 원조조정(central coordination) 협약과 현지차원에서의 원조조정 협약들과의 연관관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주도적인 원조조정 협약은 원조조정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현지 및 부문별 원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수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 현지차원에서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나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수혜국의 정책 지향적인 원조조정의 노력에 의해 촉진되어져야 한다.

자료 OECD. 1992.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Development Assistance Manual.* Paris. pp. 8 9

전망, 재정 및 채무상황 등 수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며 또한 지원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원조조정 회의에는 자금공여자와 수혜국 정부뿐 아니라 현지(수혜국내)의 개발기관들도 참여토록 하여 수혜국의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입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조조정 회의에서 합의된 결정사항들은 이후 수혜국에서 부문별 또는 다른 여러 형태의 지원회의를 통해 결정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4. 원조조정 대상

원조조정은 자금공여자와 수혜국간의 원조조정뿐 아니라 수혜국내 개발기관들간 그리고 자금공여자들간에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조조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금공여자들과 수혜국 그리고 자금공여자들간의 조정이며, 이는 주로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과 원탁회의(Round Tables)와 같은 원조조정그룹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14)]

가. 수혜국내 원조조정

수혜국내 개발기관간의 원조조정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즉 개발기관들은 자금공여자들의 원조에 대해 각자 자기 기관으로의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조조정에 대한 제도적인 능력이 부족한 수혜국의 경우 이러한 원조유치를 위한 로비활동 등 개발기관간 경쟁은 더욱 심할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개발기관들에 대해 자금공여자들로부터의 원조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정부내 전체적인 원조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구분이 명확

---

114) World Bank(1995).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원조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단일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원조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원조조정기관을 두어 원조를 정부예산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각 개발기관에 공평히 배분해야 할 것이다.

나. 자금공여자와 수혜국간의 원조조정

수혜국 입장에서 원조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공여자들로부터의 원조의 상이함과 그에 따르는 제도적 및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일 것이다. 자금공여자 및 공여기관들은 각각의 지원조건과 원조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하는 수혜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특히 자금공여자가 원조에 대해 목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개발에만 사용되어지도록 조건을 부과한다면 수혜국은 전체 개발전략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금공여자들은 수혜국이 원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 및 절차들을 보다 표준화시키거나 간소화하여 수혜국 정부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공여자들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비공식적인 접촉도 수혜국의 원조조정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자금공여자간의 원조조정

자금공여자와 수혜국간의 원조조정이 있기 전에 자금공여자들간의 원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원조조정의 효율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공여자들은 수혜국의 주요 정책적 이슈나 투자계획 정보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가지거나 부문별 원조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원조방식에 있어 협조융자(co – financing) 형태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공여자들간의 원조조정은 자금공여자들이 원조를 통해 상업적 및 정치

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노력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혜국이 원조의 흐름을 조정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수행할 수혜국 정부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금공여자가 이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

5. 원조조정그룹 참여

대다수의 원조조정그룹은 장기간동안 금융 및 기술지원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공여자들을 참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의 구성은 통상적으로 원조수혜국이 원조조정그룹의 의장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115] 수혜국의 원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원조조정과정에서의 지원의 효율성과 지원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오고 있다. IMF는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모든 원조조정그룹 회의에 초청되어지고 있으며 세계은행과IMF는 또한 원조조정그룹 회의에 제출될 모든 경제관련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협력해 오고 있다. 세계은행과UNDP간에도 원조조정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에 대해서 UNDP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UNDP 주도하의 원탁회의(Round Table)에 대해서 세계은행도UNDP와 수혜국 정부를 지원하여 필요 시 되는 거시경제적 연구를 준비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도 자금공여국들의 지원정책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모든 원조조정그룹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한 기관들이나NGO들,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은행들도 참가하고 있다.

---

115)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의 경우 이를 주도하는 세계은행이 의장국이 되며, 원탁회의(Round Tables)의 경우 유엔개발계획(UNDP)이 의장국이 된다.

<표 I-1> 원조조정회의(1997 1998년 3월 현재까지)

회의장소	의장	회의형태	국가
파리	세계은행	Consultative Group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키르기즈공화국, 마케도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이집트, West Bank/ Gaza, 가나,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세네갈, 시에라리온,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필리핀, 볼리비아
	세계은행	Donors Meeting	르완다, 라이베리아
	세계은행	Development Forum	인도, 파키스탄
	세계은행	Aid Group	네팔
	세계은행	Development Forum	스리랑카
브뤼셀	EC / IBRD	Donor conference/ Donor Meeting	보스니아
	세계은행 EU	G-24 CG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세계은행	CG	예멘
	세계은행	Donors Conference	콩고
	세계은행	CGCED	Caribbean Group for Economic Cooperation
	IDB	CG	니카라과
	UNDP	Donors Roundtable	카보베르데
제네바	UNDP	Roundtable	버키나파소, 차드, 말리, 니제르, 상투메, 라오스, 부탄, 토고, 잠비아, 기니비사우, 과테말라
	IDB	CG	
동경	세계은행	CG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계은행	Investor Conference	우즈베키스탄
	ADB	CG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일본/세계은행	Donors Meeting	몽골
후쿠오카	ADB	CG	크로네시아, 마샬군도
수혜국의 수도	UNDP	Special Consultation	카보베르데
	UNDP	Roundtable	차드
	세계은행	CG	에티오피아,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하이티, 코트디브와르, 베트남
	세계은행	Aid Group	방글라데시
	세계은행/정부	Development Forum	파키스탄
	UNDP	Special Consultation	레소토
	ADB	CG	바누아투
워싱턴 D.C.	세계은행	Donors Meeting	알바니아
	세계은행	CG	Caribbean Group for Economic Cooperation
	세계은행	Informal Donors Meeting	하이티,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자료: World Bank. 1998. "Aid Coordination Meetings in 1997 and 1998", Annex 8, p. 49 of Discussion Paper,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roposed Actions for the World Bank.*, (May)

6. 원조조정그룹의 형태

1950년대 말부터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첫 원조컨소시엄이 설립된 이후 수많은 원조조정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다(<표 I-1> 참조). 원조조정그룹의 형태는 국가별 및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과 UNDP 주도의 원탁회의(RT: Round Tables)[116]를 중심으로 원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그룹과 원탁회의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원조조정그룹이 설립되는 형태이다[117]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수혜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조정그룹형태도 있는데[118] 이러한 지역별 원조조정그룹의 의장국은 대부분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의 지역별 다자간개발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다. 원조조정그룹들은 원조조정 지원뿐 아니라 자금공여자나 원조수혜국을 대상으로 가뭄, 식량, 운송문제 등 특정 이슈에 대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제공하기도 한다.[119]

7. 원탁회의(RT)와 협의그룹(CG)

가. 원탁회의(RT: Round Table)

---

116) 북한에 대해서도 농업부문 개발지원을 위한 원탁회의가 있으며, 1998년과 2000년에 원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부록 III> 참조).

117) 이와 유사한 형태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부간 그룹(Inter-Governmental Group for Indonesia)"이나 OECD 지원의 "터키에 대한 컨소시엄(Consortium for Turkey)" 등이 있다.

118) 지역별로 구성된 원조조정그룹으로는 "Caribbean Group for Economic Cooperation in Development", "Coordinating Group for Central America", "Club du Sahel",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등이 있다.

119) World Bank(1989a).

< 표 I-2 > 원탁회의(RT) 대상국(1988 1998년)

국가	최근 원탁회의	국가	최근 원탁회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22개국)		세이셸	1994. 6
앙골라	1995. 9	시에라리온	1996. 9
베닌	1992. 4	남아프리카공화국	1991. 9
버키나 파소	1995. 10	토고	1988. 3
부룬디	1992. 12	아시아 · 태평양 · 오세아니아(10개국)	
카보베르데	1995. 6	아프가니스탄	1997.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94. 5	부탄	1997. 1
챠드	1998. 10	쿠크 제도	1990. 5
코모로	1994. 10	북한	1998. 5
콩고	1996. 11	피지	1990. 5
적도 기니	1988. 11	라오스	1997. 6
잠비아	1994. 4	몰디브	1994. 10
기니비사우	1994. 11	서사모아	1988. 5
레소토	1994. 11	솔로몬군도	1988. 10
말리	1994. 9	바누아투	1988. 10
모리셔스	1990. 3	동유럽 · CIS(2개국)	
나미비아	1995. 11	우크라이나	1996. 4
르완다	1996. 6	우즈베키스탄	1995. 10
상투메	1995. 5		

자료: UNDP. 1998. *Evaluation of the Round-Tables Mechanism: A Participatory Approach.* pp. 9 10.

원탁회의(RT)는 국가의 전체적인 개발전략과 향후계획 재원조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혜국 정부와 자금공여자들간의 원조조정 회의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 따르면 "원탁회의는 수혜국 정부와 UNDP의 공동주관 하에 자금공여자들에게 거시적인 안정과 구조조정정책 등 보다 확대되고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라고 정의하고 있다.[120] 원탁회의는 수혜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UNDP는 원탁회의를 관리하기보다는 수혜국 정부에게

120) UNDP(1998a), p. 5.

< Box Ⅱ> 협의그룹(CG)에 대한 일반지침

세계은행의 협의그룹에 대한 일반지침은 다음과 같다.

▶ CG 운영에서 수혜국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새로운 CG를 구성할 경우 세계은행내 해당지역국은 managing director나 CG와 관련한 운영국(operations)에 CG 구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한다.
▶ CG 준비와 자금공여자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후복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금공여자들은 당해연도 예산에 해당국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CG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원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지원가능한 금액이 필요하다. 각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규정할 수는 없지만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국내로부터의 재원조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IMF, 지역개발은행들, UNDP, EU 등 다자간 국제기구들은 가능하면 조기에 CG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 World Bank. 1989.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Preparing Consultative Group Meetings," p. 1. Operational Directive 14.30 – Annex A.

원탁회의에 대한 관리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촉진시키는 등 수혜국의 원조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원탁회의는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어진다.[121] 첫번째

121) UNDP(1999a), pp. 12 13.

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수혜국 정부가 원탁회의에 필요한 기초서류나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UNDP가 지원하는 단계이다. 준비단계기간 동안 UNDP는 수혜국 정부와 자금공여자들간에 원탁회의에서 재원조달측면이나 자금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수혜국 정부와 주요 자금공여자들간에 공식적인 원탁회의를 가지는 단계이다. 원탁회의는 일반적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수혜국 정부와 UNDP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원탁회의 이후의 부문별 및 주제별 회의(sectoral and thematic consultations)가 열리는 단계이다. 이런 부문별 및 주제별 회의의 목적은 원탁회의에서의 논의사항과 결정사항들을 보다 세부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금공여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원조 제안이 결정된다. 네 번째 단계는 원탁회의에 대한 정규적인 점검회의이다. 점검회의에서는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진행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실행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게 되며, 이는 본 원조조정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1998년 10월 현재 총 36개국[122]이 UNDP의 원탁회의를 통해 원조조정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근 북한, 앙골라, 콩고, 나미비아도 원탁회의를 통해 지원 받고 있다.[123][124] UNDP(1998)에 따르면 1988년에서 1998년까지 10년 동안 원탁회의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약 34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2> 참조). 원탁회의를 통해 지원약정된 원조액은 1988년에서 1997년까지 약 120억 달러에 이르고, 이중 50억 달러가 사하라이남

---

12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2개국, 아랍 2개국, 아시아 및 태평양, 오세아니아지역 11개국,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2개국.

123) UNDP(1998a), p. 7.

124) 원탁회의(RT)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관리가 UNDP 본부, 각 UNDP 지역사무소, Management Development and Governance Division(MDGD)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탁회의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40억 달러가 아시아지역에 30억 달러가 동유럽과 CIS에 지원약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25]

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

협의그룹(CG)도 원탁회의와 같이 자금공여자와 수혜국간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위한 포럼으로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운영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원탁회의(RT)가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대상으로 한다면 협의그룹(CG)은 최빈개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잘 정비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26] 협의그룹의 운영절차는 세계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여타 원조조정그룹의 운영절차와 동일하다(<Box 1> 참조).

125) UNDP, op. cit., p. 7.
126) UNDP(1999a), p. 12.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1. 베트남

가. 개요

베트남은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는 북한과 같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선진국으로부터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1986년 '도이머이(Doi Moi)' 개혁노선을 채택하여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확대와 개방정책을 실행해 나가며 또한 1989년 9월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는 베트남군을 철수함에 따라 선진국 등 서방으로부터의 양자간 지원 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부터는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자금지원도 다시 재개되었고 1994년 2월에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조치도 해제됨에 따라[127]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 오고 있다.

나. 경제개혁

베트남의 1970년대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농업과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토대로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함께 전국규모의 농·공업 단지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다.[128] 이후 1979년 베트남 식의 '신경제정책(New Economy Policy)'이 채택되어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이

---

127)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995년 8월에 재개되었다.
128) 국제민간경제협의회(1990), 4면.

루어지면서부터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산업기반과 하부구조의 미비와 서방국가로부터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경제발전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129] 특히 아직 경제가 중앙통제체제하의 사회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민간투자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외부지원도 대부분 구소련 등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규모도 적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외부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매우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지원된 자금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국영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지원되었다.

이후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Doi Moi)' 개혁노선을 채택하여 서방국가와 인근아시아 특히 동남아국가에 대한 개방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또한 경제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소규모의 사경제부문을 인정하고 이를 정착시키려는 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실행하면서 경제개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와 교역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131]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혁추진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국인직접투자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했다. 1997년의 베트남의 실질 GDP성장률은 8.8%를 보였으며 1989년 '도이머이' 개혁노선을 채택한 이후 줄곧 평균 8%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고 있다.[132] 물가상승률도 1980년 중반 500%에서 1996년에는 한자리수 이하로 떨어졌으며 교역규모도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에는

---

129) UNDP(1998b), p. 4; 권율(1993), 19면.

130) UNDP(1996), p. 3.

131)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체로의 이행은 1986 94년에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가격체계의 자유화, 농업분업화 환율체계 통합,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부지출축소, 안정적인 재정적자 유지, 여타국들과의 외교적 및 경제적 결속력 강화, 외국과의 교역·외국인직접투자·개발협력 증대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자금공여국들로부터의 민간투자나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유입은 베트남 경제를 더욱 발전하게 하였다[UNDP(1998), p. 4].

132) UNDP(1998b), p. 13.

12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교역대상도 예전의 동구 공산권에서 인근아시아 및 서방국가로 바뀌었다(참고로 1991년 동구 공산권과의 교역이 전체교역의 80%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10% 정도임).[133]

다. 원조조정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대되면서 자금공여자들간 그리고 자금공여자와 베트남 정부간의 의견 및 정보교환 등 원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가 원조조정과 원조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원조조정능력 부족으로 자금공여자를 포함한 UNDP와 세계은행이 원조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주요 원조조정 회의로는 세계은행의 협의그룹(CG) 회의가 정규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여타 반기별 및 월별 자금공여자회의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도 세계은행의 협의그룹(CG) 회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인적개발부문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부문별 차원에서의 정부를 지원하는 활동들 실행해 오고 있다.

라. 원조조정 협의체

1) 연례 협의그룹(CG) 회의[134]

1993년 11월 처음으로 가진 국제자금공여자회의(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에서 베트남정부는 향후 연례 자금공여자 회의는 세계은행 주관

133) UNDP(1996). pp. 3-4.

134) 세계은행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서의 주요한 이슈중 하나는 베트남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세계은행을 포함한 자금공여자들간의 협력관계 확대 및 강화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현재 베트남에 대한 협의그룹(CG)의 의장국으로서 베트남의 개발 의제에 대한 CG회원들의 참여를 확대

하에 협의그룹(CG) 회의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베트남에 대한 중심적인 원조조정은 협의그룹을 통해 이루어졌다.

UNDP도 베트남 정부의 원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동 국제자금공여자회의에서 베트남 정부는 협의그룹 하에 원조조정회의가 이루어지지만 UNDP도 지속적으로 원조조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UNDP는 기술지원분야나 빈곤축소와 같은 주제별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의그룹 회의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이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UNDP는 이와 관련한 활동이나 회의들을 주최하기도 한다.

2) 반기별 점검회의(Semi-Annual Review Meetings)

베트남정부는UNDP와 공동으로 모든 협의그룹(CG) 자금공여자들과 함께 반기별 점검회의를 가지고 있다. 동 회의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개혁 지원 및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자금공여자들의 지원활동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및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자금공여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정책 및 실행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동 점검회의는 협의그룹을 통한 원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또한 외국에서 개최되는 협의그룹과 달리 베트남 현지에서 주로 개최되기 때문에 협의그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베트남의 정부관리들이나 관련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인 원조조정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고 있다. 1996년의 CG회의는 하노이(Hanoi)에서 열렸으며, 1997년 12월회의는 동경에서 개최되어 신정부의 6개 개발의제(6-point development agend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8년 12월 회의는 파리에서 개최되어 베트남 정부의 'Rural Development Strategy'에 대한 지원과 원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 NGO단체들도 위 3년동안의 CG회의에 참석해 왔으며, 민간단체들도 1998년 6월에 개최된 CG점검회의에 참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World Bank(1998), p. 47.

3) 월별 자금공여자회의(Monthly Meetings of the Donor Group)

1995년 3월부터 UN의 베트남 상주대표는 모든 주요 자금공여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적으로 월별 자금공여자회의(매월 둘째주 화요일)를 구성하고 주관하고 있다. 동회의의 주요목적은 국가의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조조정 및 원조관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월별회의에는 UN 기관, 자금공여자 베트남 고위급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고, 주로 행정개혁 법규개혁 예산법의 효과적인 실행, 빈곤퇴치, 성차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4)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자금공여자 작업반(Donor Working Group on ODA Implementation and Operational Issues)

1995년 파리에서의 협의그룹회의에서 베트남정부와 자금공여자들은 베트남 정부가 지난 3년동안의 원조조정 및 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UNDP가 이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UNDP는 월별 점검회의의 하부그룹으로 자금공여자 작업반(Donor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베트남 정부를 지원하였다 이후에도 동 작업반은 원조조정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자문을 베트남 정부에 제공해 오고 있다.

마.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베트남에 대한 자금공여국들의 양자간 지원이나 국제금융기구들의 원조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그나마 동구 공산권국가나 스웨덴, UN, NGO들만이 베트남에 대해 지원을 해왔다.[135] 구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원조는 1980년말 베트남 전체 GDP의 10%에 이를 정도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베트남이 1989년부터 서방국가 및 인근

135) UNDP(1996).

아시아국들에 대해 개방정책을 실행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1991년에는 이들 공산권으로부터의 원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서방국가로부터의 원조가 증가하게 되었다(<표 II-1> 참조). 단적인 예로 러시아의 경우 1992년부터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반면 미국은 1992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였다. 1991 1993년 동안 일본과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양자간 자금공여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300여개 이상의 NGO들로부터 베트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개혁을 실행한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7년 동경에서 열린 베트남에 대한 자금공여자들의 협의그룹(CG) 회의에서는 주요 자금공여자들이 24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136][137]

베트남에 지원되는 ODA의 지원형태를 보면 1991 1995년 동안은 무상공여가 전체 ODA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6년부터는 무상공여보다는 융자형태로 지원되는 ODA부분이 더 커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투자프로젝트융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IMF의 ESAF나 세계은행의 SAC로부터의 자금지원도 융자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협의그룹(CG) 회의에서 자금공여자들의 지원약정중 80%가 양허성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융자형태로 지원되며 순수한 무상공여는 2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UN 기관들로부터의 자금지원은 여전히 무상공여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138]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1990년대 초 베트남에

---

136) 1993년 국제자금공여자회의(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에서는 19억 달러의 자금지원이 약정되었으며 1994년에는 20억 달러, 1995년에는 23억 달러, 1996년에는 24억달러의 자금이 지원약정되는 등 지원규모는 증가하여 왔다.

137) UNDP(1998b), p. 25.

138) UNDP(1998b), p. 29.

<표 II-1>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자금지원(지급액 기준)

(단위: 천달러)

Donor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다자간 유엔시스템										
ESCAP	62	10	12	37	5	2				
FAO	504	894	499	440	562	406	239	480	466	138
GEF				425	1,334	690	338	2,000	1,045	1,005
IAEA	339	1,315	682	782		633	805	610	730	1,020
IFAD					1,000	1,300	2,374	2,470	2,339	
IFC									200	180
ILO	11	57			65	22				
IMF		40	154	206	313	86,503	91,623	175,400		
IMO			1							
ITU				13			45			
TCDC	1									
UNCDF			31	2,304	4,561	2,092	1,000	14,373	2,668	35
UNDCP				74	175	63	143	44	196	5
UNDP	19,744	33,837	25,731	17,139	12,693	9,179	7,831	10,905	11,292	21,513
UNEP	36	34								
UNESCO	44	105	241	175	29				13	20
UNFPA	8,799	5,479	4,189	3,606	4,242	10,435	6,564	4,101	4,559	9,840
UNHCR	2,016	10,547	9,646	11,920	14,703	10,548		11,989	5,555	763
UNICEF	7,545	11,998	10,353	12,837	18,533	14,530	17,224	12,153	9,617	52,717
UNIDO	101	211	46	650	28	1,202	733	899	163	331
UNIFEM	27	65	267		54	22	90	78	56	
UNRFNR					1					
UNV		23		40		140	91		92	
UPU	2	13		4						
World Bank						125,900	47,048	205,635	187,569	182,730
WFP	4,008	12,004	14,250	13,830	19,954	14,764	14,184	13,499	9,639	9,427
WHO		1,645	2,827	2,08	3,057	2,343	1,760	3,496	4,273	2,551
WMO	4			26	54	51	20	105	60	
합계	**43,243**	**78,277**	**68,929**	**66,590**	**81,363**	**280,825**	**192,112**	**458,237**	**240,532**	**282,275**
비유엔시스템										
ASDB				4		5,357	51,319	32,263	154,437	132,920
CDB										870
ENDA								50	40	
EU	945		1,535	1,805	28,797	24,547	9,500	17,598	15,498	7,562
IUCN				31						
MONTREAL-P								816	72	56
합계	**945**		**1,535**	**1,840**	**28,797**	**29,904**	**60,819**	**50,727**	**170,047**	**141,408**

<표 Ⅱ-1> 계속

Donor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 양자간										
알제리			11					100	300	
호주	1,823	4,853	3,151	9,362	13,617	34,799	38,072	25,080	39,551	46,129
오스트리아		54	27	466	305	1,000	3,472	280	1,654	
벨기에		245	253	451	85	8,174	7,360	10,728	5,832	3,471
캐나다		31	4,931	3,372	3,973	5,961	1,494	11,792	8,944	9,790
중국			2					2,114		
체코			850					1,680	1,365	1,966
덴마크		205	444		7,893	18,273	7,201	17,260	26,749	13,399
이집트	38									
핀란드	11,375	11,925	12,630	12,415	7,986	9,750	10,867	7,814	6,535	9,229
프랑스	4	764	16,144	21,228	30,311	44,963	37,103	55,884	59,162	40,119
독일	8	4	96	915	1,111	2,511	6,919	21,793	29,332	44,073
홍콩					1.,400	1,400				
인도						1,132	1,081	38	35	
인도네시아				20						
이탈리아		61	8,605	15,800	27,473	7,821	2,911	2,425	954	1,843
일본	17	118	116	158,552	23,956	63,277	132,948	133,075	198,829	350,572
쿠웨이트				12	2,538	6,645	23,481	24,618		
룩셈부르크								2,373		
네덜란드	10	906	8,157	4,723	13,065	16,974	32,300	26,021	12,852	12,896
노르웨이	7	69	786	460	707	5,953	6,790	4,594	7,627	3,359
뉴질랜드		37	148	504	669	55	123	3,888	4,240	804
필리핀					16	53				
한국		3		214	1,306	2,396	3,976	4,975	8,840	3,193
싱가포르				1,000						
스페인	28,401							6,580	3,686	18,760
스웨덴	430	38,904	43,164	49,157	26,840	30,419	16,575	30,182	45,971	42,249
스위스		1,224	227	335	2,143	1,317	6,229	10,987	12,673	11,576
태국						1,241		2,546	1,294	753
영국			33	710	823	4,248	8,041	9,491	7,355	6,343
미국				40	146	438	963	844	465	6,735
러시아	232,193	321,799	159,558							
합계	**274,306**	**381,202**	**259,333**	**279,736**	**166,363**	**268,800**	**347,906**	**417,162**	**484,245**	**627,259**

<표 II-1> 계속

Donor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3. 비정부기관										
FOR THOSE WHO HAVE LESS – ACTIONAID AUSTRALIA					3					
ASSN. FOR DEV.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18								
ASSOCIATION DE COOPERATION INTERNATIONALE AU DEVELOPMENT		10	34							
AUSTRALIAN CATHOLIC RELIEF			19							
AUSTRALIAN COUNCIL FOR OVERSEAS AID									2	1
ACTIONAID		105		638	150	92	44	53	122	46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55	968	338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ADRA AUSTRALIA)				44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 SWEDEN								232		
AGRICULTURES FRANCAIS ET DEVELOP INTERNATIONALE								314	8,629	21,605
합계		**133**	**53**	**682**	**153**	**147**	**1,012**	**932**	**8,753**	**21,652**
총계	**318,494**	**459,612**	**329,850**	**348,848**	**276,676**	**579,676**	**601,849**	**927,058**	**903,577**	**1,072,594**

주: 1998년자료는 예정임

자료: 1989 90년 자료는 UNDP, VIET NAM: DEVELOPMENT COOPERATION 1992, pp. 46 47;
1991 93년 자료는 UNDP, VIET NAM: DEVELOPMENT COOPERATION 1994, pp. 40 41;
1994 98년자료는 UNDP, VIET NAM: DEVELOPMENT COOPERATION 1998, pp. 47 48참조.

실사단을 파견하였고, 베트남에 대한 융자는 1993년중반 이후부터 재개 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베트남은 1993년 11월 세계은행과 UNDP와 공동으로 '국제자금공여자회의(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를 개최한 바 있다. 동 회의에서 베트남은 자금공여자들로부터 약 19억 달러의 지원을 약정 받았으며 이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자금공여자들의 지원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1994년 협의그룹(CG) 회의에서는20억 달러를 1995년 협의그룹 회의에서는23억 달러의 자금지원이 약정되었다.[139]

최근 베트남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본정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표 II-1> 참조). 일본이 베트남에 대해 가장 많은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1997년의 자금지원액(지급액기준)은 2억 달러로 1억6,700만 달러는 투자프로젝트지원이고2,800만 달러는 기술지원으로 제공되었다 세계은행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997년 자금지급액은1억8,700만 달러로 이중 투자프로젝트 지원은 1억7,000만 달러이고 기술지원은 1,700만 달러였다 그 다음이 아시아개발은행으로1997년에 1억5,400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UN 산하기관들이1997년에 5,3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양자간 자금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부기관(NGO)들로부터도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40]

2. 팔레스타인(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가. 개요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우 2000년 6월 현재 약 50개

139) UNDP(1996), p. 5.
140) UNDP(1998b), p. 29.

이상의 양자간 및 다자간 자금공여자들로부터 전후복구에 대한 개발지원을 받아 오고 있다. 동 지역에 대한 원조조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Palestinian Authority), 이스라엘 정부, 국제자금공여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다자간 기구로는 주로 세계은행이 지원해 오고 있다.

나. 원조조정

1993년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제1차 자금공여자 회의 이후 동 지역에 대한 원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조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원조조정은 수혜국이 주도해야되지만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영토 및 주권분쟁으로 특정한 원조조정의 주도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자금공여자들 및 국제기구들이 부분적으로 원조조정을 지원해 나갔다.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Palestinian Authority)가 설립되고[141] 동 자치정부가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인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강화시켜 나감에 따라 주요 자금공여자들과 함께 원조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142] 그러나 원조조정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공행정기능 미비, 수많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잠정적인 합의와 연관된 불안정한 상황, 수많은 자금공여자들과 다자간기관들 및 UN 기관들간의 상이한 이해관계, 정치적인 불안정 등으로 원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국제자금공여단

141) 1993년 9월 '오솔로 협정(Osolo Accord)'에서 조인한 팔레스타인 잠정자치선언과 1994년 5월 '카이로 협정(Cairo Agreement)'에서 조인한 선행 자치협정에 의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Palestinian Authority)가 설립되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자치유지와 행정을 관리하게 되었다.

142) 1993년 오솔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세계은행이 여타 자금공여자 및 팔레스타인과 협력하여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제전반에 대한 검토와 전후복구를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들을 발표했는데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본격화된 원조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했다.

< Box Ⅲ> 3자간 활동계획(Tripartite Action Plan)

"3자간 활동계획(TAP)"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개발을 위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자금공여자 이스라엘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TAP는 긴급지원프로그램(EAP)과 더불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TAP는 3자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과 현안에 따라 새로이 개정되고 확대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 합의된 TAP는 199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다. TAP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책임
  – 기획 및 제도적인 절차
  – 입법 경제관리
  – 재정 투명성

· 이스라엘의 책임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관세관리와 수익분담
  –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간의 안전한 인적 및 물적 교류 촉진
  – 산업지구 창설 촉진과 Gaza 항만에서의 물류유통 촉진

· 자금공여자들의 책임
  –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 교역 및 투자 촉진

체는 "3자간 활동계획(Tripartite Action Plan)"을 마련하여 각자의 책임과 원조조정 활동들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원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Box Ⅲ> 참조).[143]

143) "3자간 활동계획"과 같은 다자간 원조조정 메커니즘이 설립된 이후에도 동 지역에

다. 원조조정 협의체

"3자간 활동계획(TAC)"이 마련된 이후 양자간 및 다자간 자금공여자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타 정부기관들과 지방정부들 현지 및 국제 NGOs들과 협력하여 원조조정을 지원해 나갔으며 이외에도 원조조정을 위해 잠정연락위원회(AHLC)와 협의그룹(CG)과 같은 정기적인 원조조정 회의와 합동연락위원회(JLC), 현지원조조정위원회(LACC)와 부문별실무반(SWGs)과 같은 다양한 원조조정 위원회들을 통해 원조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UN시스템내에서는UNSCO으로 하여금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UN 산하기구들의 원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 잠정연락위원회(AHLC: Ad-Hoc Liaison Committee)

잠정연락위원회(AHLC)는 1993년 10월 중동의 평화과정 지원과 연계하여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자금공여자간 및 자금공여자와 팔레스타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세계은행이 의장국을맡고 있으며 12명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팔레스타인의 개발복구와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조정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2) 합동연락위원회(JLC: Joint Liaison Committee)

잠정연락위원회(AHLC)는 1994년 11월에 주요 자금공여자들 팔레스타인

대한 자금공여자들의 개발자금 지원을 촉진하고 원활한 원조조정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4개의 정치적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① the Paris Protocol on Economic Relations(1994. 4. 29); ② the Agreement on the Gaza Strip and the Jericho Area(1994. 5. 4); ③ the Agreement on Preparatory Transfer of Powers and Responsibilities(1994. 8. 29); ④ the Interim Agreement on the West Bank and Gaza Strip(1994. 9. 28).

자치정부(PA), 이스라엘 정부에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이슈 및 전략들을 논의하고 정책적인 조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합동연락위원회(JLC: Joint Liaison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기획·국제협력부(MOPIC: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가 주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 자금공여자간에 합의된 "3자간 활동계획(TAP)"의 실행을 감독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3)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세계은행이 주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약 50여개의 양자간 및 다자간 자금공여자들이 동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협의그룹 회의는 매년 열리며 참가자들에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개발지원방법과 개발투자의 우선순위,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팔레스타인으로 하여금 자금공여자들로부터의 지원약정을 유도하는 등 자금조달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4) 현지원조조정위원회(LACC: Local Aid Coordination Committee)

현지원조조정위원회(LACC)는 잠정연락위원회, 합동연락위원회, 협의그룹 등의 원조조정을 보완하여 현지에서의 원조계획 및 원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모든 자금공여자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의 현지 대표들과 세계은행 노르웨이 정부, UNSCO(UN Special Coordinator's Office)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5) 부문별 실무반(SWGs: Sector Working Groups)

현지원조조정위원회(LACC)는 교통통신, 사회간접시설 및 주택, 보건, 고용촉진, 교육, 민간부문, 정책, 재정, 관광, 농업, 제도정비, 환경 등 12개 부문에 대한 실무반을 설립하여 부문별 원조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6) UN 산하기구들의 지원

팔레스타인의 개발을 위한 UN 산하기구들의 지원은 약 20여년 동안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1993년에서 1998년 동안 약 10억 달러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144)]

1980년부터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UNDP는 1993년에서 1997년 동안 약 9,300만 달러상당의 인프라건설을 위한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팔레스타인의 망명자를 지원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UNRWA(UN Relief and Works Agency)는 매년 난민들을 위해 1억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자금공여자들의 여러 개발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UN Children's Fund)도 1980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94년부터는 동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문 개발지원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1994년 3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UN 산하기구들의 모든 지원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산하기구들간의 원조조정을 위해 UNSCO(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Coordinator in the Occupied Territories)가 설립되었다. UNSCO는 UN과 세계은행에 의해 지원 받는 현지원조조정구조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1993년 9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평화협정 이후 국제자금공여자들은 10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제1차 자금공여자회의(donor's conference)를 가졌다. 동 회의에서 24억 달러 상당의 자금지원이 약정되었고 이후 지원약정은 계속 증가하여 1999년 말 현재까지 총 57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지원 약정되었다 이중 41억 달러가

144) World Bank & UNSCO(1999), p. 37.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이며 27억 달러 이상이 지급되어 왔다. 이 기간동안 자금공여자들은 매년 평균 4억 6,400만 달러 정도를 지급해 왔다.[145] 자금지원중 2/3가 무상공여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연리 2 3%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되었다[146]

1993년부터의 자금공여자들의 지원은 초기에는 경상재정비용에 많이 지원되었고 차츰 인프라개발에 대해 지원이 늘어났었다. 지원부문은 단지 인프라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제도정비, 사회복구 등에도 지원되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자금공여자들은 피폐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제도정비, 기술지원, 민주화지원, NGOs에 대한 자금지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행정에 대한 경상비용 등을 지원하였다(<Box Ⅳ> 참조).

주요 자금지원국으로는 미국이 1998년 현재까지 5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지원을 약속하였고 그 다음이 EU(4억 2,100만 달러), 독일(3억 5,500만 달러) 순이다(<표 Ⅱ-2> 참조).[147] 한국도 1,5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여 1998년 현재까지 227만 달러를 지급해 왔다.

자금공여자들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개발을 위해 양자간 자금지원 외에도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등 다자간 자금지원 조달방안을 통해서도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다자간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기술지원신탁기금(TATF: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 팔레스타인 신탁기금(Trust Fund for Gaza and the West Bank), 홀스트기금(Johan Jorgen Holst Peace Fund) 등이 있다. 이들 기금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

145) 1996년에 5억3,7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지급을 하였고, 1998년에 4억900만 달러로 가장 적은 규모의 자금지급을 하였다. Japan & World Bank (2000), pp. 18 – 19.

146) WorldBank [Online]. Available: http://www.worldbank.org/html/estr/offrep/mena/wb&g.html.

147) 1999년 현재까지의 자금공여국들의 상세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는 입수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1998년 현재까지의 자료만을 참조하였다.

<Box IV> 긴급지원프로그램(Emergency Assistance Program)

1993년 워싱턴에서의 제1차 자금공여자 회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자금공여자의 개발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1993년 12월 긴급지원프로그램(EAP)이 마련되었다. EAP는 실행되기 전에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지도자들로부터 점검을 받았으며, 정치적, 재판관할상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발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회기초시설 복구(Infrastructure rehabilitation): 도로, 관개시설, 하수관리, 발전, 주택, 통신, 농경시설
-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제도적, 정책적, 구조적인 개발 및 개혁을 실행
- 기존 서비스들의 관리 및 개선: 교육, 보건, 농업
- 팔레스타인 공공부문의 제도적인 개발: 전문적이고 명확한 정책 개발, 원조조정, 투자, 조달 및 프로그램 관리, 감독기능

마. 경제발전

자금공여자들의 원조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다. 자금공여자들의 자금지원이 시작된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크다란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낙후된 인프라시설과 공공투자의 부재, 걸프전으로 인한 인근국들의 지원감소, 이스라엘 정부의 인력 및 재화이동에 대한 제재[148]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부터는 이스

148)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재는 고용 및 교역의 기회를 감소하게 했다. 이스라엘내 팔레스

<표 II-2>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약정액
(1993 – 1998년)

(단위: 백만달러)

자금공여국	지원약정국	지원표명액	지급액
알제리아	10.00	4.00	4.00
아랍기금(Arab Fund)	150.00	149.25	1.01
아르헨티나	1.37	1.37	0.91
호주	13.01	11.21	10.84
오스트리아	25.35	25.35	19.30
벨기에	39.08	39.08	17.26
부르나이	6.00	6.00	6.00
캐나다	43.57	42.85	34.82
중국	15.94	15.94	3.84
체코	2.72	2.72	2.18
덴마크	50.13	50.13	50.90
이집트	17.21	17.21	15.51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300.00	112.50	5.68
EU	421.58	421.58	298.30
핀란드	13.90	13.90	7.93
프랑스	80.55	80.55	52.71
독일	355.42	355.42	270.80
그리스	28.23	13.64	7.58
아이슬란드	1.30	0.70	0.70
인도	2.00	2.00	1.48
인도네시아	2.00	2.00	0.00
국제금융공사(IFC)	70.00	57.80	3.80
아일랜드	7.07	6.93	6.21
이스라엘	102.00	27.50	10.50
이탈리아	156.84	156.84	60.33
일본	312.02	320.68	306.09
요르단	20.21	20.21	16.43
쿠웨이트	25.00	24.00	24.00
룩셈부르크	11.50	11.50	4.79
네덜란드	154.17	153.75	113.18
노르웨이	244.02	244.02	221.38
포르투갈	0.83	0.83	0.35

자금공여국	지원약정국	지원표명액	지급액
카타르	3.00	2.50	2.50
한국	15.00	4.13	2.27
루마니아	2.88	2.88	1.80
러시아	4.78	4.78	4.52
사우디아라비아	208.00	208.00	133.15
스페인	147.15	147.15	85.98
스웨덴	95.77	95.77	66.93
스위스	90.32	90.32	82.16
터어키	54.97	5.11	4.10
UNDP	12.00	9.71	7.66
아랍에미리트	25.00	19.00	19.00
영국	128.66	85.96	39.61
미국	500.00	350.76	344.73
세계은행	320.00	238.50	127.57
세계식량계획(WFP)	9.33	9.33	5.76
총 계	4,299.87	3,665.34	2,506.52

자료: World Bank・UNOSCO. 1999. *Donor Investment In Palestinian Development 1994-1998*. p. 44. Jerusalem: World Bank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Coordinator in the Occupied Territories.

라엘의 제재가 완화되면서 이스라엘내 팔레스타인의 고용이 증대되었고[149] 이로 인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경제도 차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표 II-3>참조).[150]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아직 매우 높고(1997년에는 약 4%) 이스라엘과의 관계개선이 명확하지않은상황이어서 지속적인경제성장은아직불확실한 상황이다

타인의 허용된 취업인구는1992년 7만명에서 1996년에는 2만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취업인구 기준으로는1992년 11만6천명에서 1996년 6만6천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Japan・World Bank(2000), p. 14 참조.

149) 1998년부터 1999년동안 이스라엘내 허용취업인은 평균 4만 5천만 명으로 증대되었으며, 실제로는12만5천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다.

150) 1998년 GDP 성장률은 3.8%, 1999년에는 4.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실업률도 1999년에는 최고에 달했던 1996년의 거의 절반수준은12.4%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Japan・World Bank(2000), p. 14.

<표 Ⅱ-3>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인당 GNP 성장률	-3.0	-4.2	-9.7	-7.4	-1.8	3.1	1.4
GNP 성장률	1.9	1.7	-4.4	-0.3	2.4	7.0	5.2
GDP 성장률	10.8	6.7	-5.2	-1.0	-0.7	3.8	4.0

자료: Japan・World Bank. 2000. *Aid Effectiveness in the West Bank and Gaza*. p. 12.

3. 東티모르(East Timor)

가. 개요

1999년 8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발생한 내전으로 동티모르의 산업시설은 피폐화되었고 이에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151] 국제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

151) 1999년 8월 30일 유엔안정보장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UN Mission in East Timor (UNAMET)"은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동 투표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동티모르의 특별자치구협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행되었다). 총 98.6%의 투표율에서 21.5%가 찬성하였고 78.5%가 반대함에 따라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9월 4일 독립결과 발표에 따라 친인도네시악계 민병대는 주민들을 무차별 살육, 방화, 약탈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전체인구의 1/3인 25만명이 서티모르 난민촌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 호주 주도의 "국제동티모르파견군(INTERFET)"을 구성하여 9월 20일 선발대를 파병하여 사태를 수습하였다 유엔은 피난민들의 자발적인 귀환을 지원하고 또한 대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0월 27일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CAP)"을 주도하였다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25일 동티모르가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까지 2 3년간 잠정통치를 담당할 "유엔 동티모르 잠정 행정기구(UNTAET: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를 설립하였다. UNTAET는 이전

자금공여자 회의[152]를 개최하여 개발 자금을 조달하였고 또한 "동티모르 신탁기금(TEFT: Trust Fund for East Timor)"과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신탁기금(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Trust Fund)"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여타 전후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티모르도 내전이후 제도정비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조정할 능력을 배양해야 했다. 이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자금공여자단체, 비정부기관(NGO)들을 중심으로 동티모르의 제도정비와 원조조정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다.

나. 원조조정 협의체

주요 원조조정 협의체로는 "자금공여자 조정위원회(Donor Steering Committee)"와 "자금공여자 조정단(Donor Co-ordination Unit)"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부문별 위원회(Sectoral Committees)" 등이 있다.[153]

1) 자금공여자 조정위원회(Donor Steering Committee)

동 위원회는 동티모르 신탁기금(TEFT)에 자금을 출연한 자금공여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TEFT하에 운영되는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공여자들간의 효과적인 원조조정을 위한 원조조정 위원회 설립을 촉진시키고 있다.

UNAMET의 모든 임무를 이양받고, 동티모르의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며, 사법권을 포함하여 모든 입법 및 행정적인 권한을 가졌다.

152)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1999. 12. 17), 리스본 자금공여자 회의(2000. 6. 21-23).

153) UN・World Bank(1999), pp. 10-11.

2) 자금공여자 조정단(Donor Co-ordination Unit)

동 조정단은 동티모르의 개발지원을 위해 세계은행과UN 산하기관들, 자금공여단체, 비정부기관(NGO)들이 지원하는 모든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립승인과 이를 점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동 조정단이 이와 같이 모든 개발지원들을 관할하는 것은 개발지원에 있어서의 우선성을 정하고 지원의 중복을 피하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 조정단은 또한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에서 합의된 지원활동들의 진척상황도 점검해 오고 있다.

3) 부문별 위원회(Sectoral Committees)

개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교육, 환경, 재정, 거시경제, 보건, 인권, 인프라, 지방행정 등 부문별로 원조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자금공여자 조정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문별 개발지원에 있어서의 우선성 선정이나 프로젝트 실행 등을 점검하고 있다.

4) 기타

위의 원조조정위원회들 외에도 UNTAET의 지방대표는 해당 지방의 개발지원에 대한 조정을 책임지고 있다.

다. 원조조정 회의

1)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

일본 정부의 주최 하에 1999년 12월 17일 동경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개발자금조달을 위한 첫 자금공여자 회의가 개최되었다.[154]

동 회의에서는 비정부기구(NGO)들을 포함한 국제기관들과 50여개국으

154) 의장국은 세계은행과UNTAET가 공동으로 맡았다.

<표 Ⅱ-4> 동경 자금공여자 회의에서의 지원약정액

(단위: 백만 달러)

지원부문	지원약정액
인도적 지원프로그램	**150**
경상재정자금	**370**
TEFT, UNTAET	215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지원	158
합 계	**520**

로부터 약 200명의 자금공여자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해 향후 3년간 5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금공여자들은 동티모르에 대한 개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티모르 신탁기금(Trust Fund for East Timor)"과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신탁기금(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Trust Fund)"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자금공여자들은 지원 약정한 5억 2,000만 달러중 1억 5,000만 달러는 인도적인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며, 3억 7,000만 달러는 초기경상재정자금(recurrent budget)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표 Ⅱ-4> 참조).[155][156]

2) 리스본 자금공여자 회의

포르투갈 정부의 주최 하에 2000년 6월 23일 리스본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자금공여자 회의가 개최되었다.[157][158] 동 회의에서도 세계은행 UNTAET,

155) 이중 2억1,500만 달러는 동티모르 신탁기금(TFET)과 UNTAET 신탁기금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억5,800만 달러는 여타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 지원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56) World Bank [Online]. Available: http://www.worldbank.org/eap/eap.ns...54c7ce975c58525684700674df1?OpenDocumen.

동티모르, 비정부기구(NGO)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리스본 회의에서는 자금공여자들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약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동경 자금공여자회의에서 자금공여자들간에 합의된 개발지원의 실행과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은행과UNTAET는 동 회의에서 동티모르의 교육 및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TFET로 부터 자금을 무상공여하는 데 합의하였다

4.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rgovina)

가. 개요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공화국은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이후 내전으로[159] 인해 국내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었고 인프라 시설이 피폐화되었다[160] 여타 전후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도정비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 지원에 대한 관리 및 조정능력 배양이 필요했다 이에 세계은행과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개발복구를 위해 신탁기금 설립과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157) 포르투갈 정부는 2000년 4월 7일 동티모르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동티모르 신탁기금(TEFT)에 총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World Bank. News Release No: 2000/ 287/ EAP 참조).

158) 동 회의에서도 세계은행과UNTAET가 공동으로 의장국을 맡았다

15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1992년 3월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후 전 유고슬라비아의 거주민인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간의 오랜 내전을 겪었다 이후 1995년 10월 "Dayton Accord"를 통해 내전이 종식되었고, 1995년 12월 파리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해 모든 거주민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방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16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1990년 GDP는 110억 달러(1인당 GDP는 2,400달러)였으나, 1995년에는 GDP는 20억 달러(1인당 GDP는 500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개발복구에 대한 원조조정은 세계은행과 EU 집행위위원회(EC)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여타 UN 산하기관들[161] 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양자간 자금공여자들도 원조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주요 원조조정은 "부문별 특별작업반(Sector Task Force)"[162]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위의 주요 자금공여자들은 해당 지원우선부문과 관련된 부문별 특별작업반에 참여해 오고 있다.[163]

나. 원조조정 회의

세계은행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1995년 10월 내전이 종식되기 이전부터 동 지역에 대한 개발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세계은행은 1994년 세계은행 내에 보스니아작업반(BWG: Bosnia Working Group)[164]을 설립하여 개발복구를 위한 계획작업을 시작하였고, 네덜란드 정부는 1백만 달러의 자금을 동 작업반의 활동에 무상공여하였다. 세계은행은 1995년 1월 바르샤바에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정부관료들과 첫 회의를 갖고 개발복구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고, 7월에 2차 회의를 통해 개발복구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20 21일 브뤼셀에서 세계은행과 EC를 공동 의장국으로 하여 첫 자금공여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개발복구를 위한 우선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개발자금 조달, 그리고 향후 개발복구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금공여자들은 동 회의에서 총 6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1996년 4월에 2차 자

161)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에서의 UN 산하기관들의 활동은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총 지휘하고 있다.

162) 발전, 주택, 운송, 관개관리 산업, 지역난방, 고용촉진, 교육, 보건 및 사회안전망 지뢰제거, 경제정책 등 총 11개 부문에 대한 특별작업반이 있다.

163) Alcira Kreimer · Robert Muscat · Ann Elwan · Margaret Arnold(2000), p. 46.

164) 동 작업반은 국내 경제학자, 변호사, 정부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네덜란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활동하였다.

금공여자 회의에서도 자금공여자들은 추가로 12억3,0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였다[165] 1997년 7월의 자금공여자 회의에서는 개발복구의 지원부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복구 지원을 위한 회의들이 개최되어 오고 있다.

165) Alcira Kreimer · Robert Muscat · Ann Elwan · Margaret Arnold, op. cit., p. 44.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Round Table)

1. 개요

북한의 개발지원을 위한 원조조정그룹으로는 북한의 농업재건을 위한 UNDP의 주제별 원탁회의(Thematic Roundtable)가 있다. 동 원탁회의는 북한의 농업개선을 위한 "농업재건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원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1998년 5월과 2000년 6월 두 차례 원탁회의를 가진 바 있다.

2. 농업재건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166]

UNDP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개선시키고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재건지원을 통해 곡물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REP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UNDP가 이와 같이 농업부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배경은 1994년 이후부터 시작된 홍수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에 식량원조와 경작지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167] 이에 UN 산하기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긴급구호방식의 지원만으로는 힘들며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농업부문을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업재건 및 환경보호

166) UNDP [Online]. Available: http://undp-dprk.apdip.net/data/actionplan.htm.
167) 북한은 1997년에 UNDP가 북한의 농업재건을 위한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AREP)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3. 원탁회의

가. 1차 원탁회의[168]

북한과 UNDP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98년 5월 28 29일 동안 농업재건과 환경보호(AREP)에 대한 주제별 원탁회의(Thematic Roundtable)를 가졌다. 동 회의는 향후 3년 동안의 북한의 안전한 식량확보와 이를 위한 식량생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을 위한 첫 원조조정 회의였다. 동 회의에는 42개국과 27개의 원조기관들이 북한과의 협의에 참여하였다.[169] 이외에도 UN 산하기관들과 여타 다자간기구들도 동 프로그램에 긴밀히 참여해오고 있다.

동 회의에서 북한당국은 향후 3년간 농업부문의 재건을 위해 3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촉구하였다. 수해복구를 위한 원유, 중장비 및 기자재 수입을 위해 9,300만 달러의 지원을 촉구하였고, 화학비료 공장의 현대화와 운영을 위해 9,300만 달러를 그리고 재식림 및 수확개선을 위해서도 11,400만 달러의 지원을 촉구하였다(<표 III-1> 참조).

원탁회의에 참석한 자금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요한

---

168) UNDP [Online]. Available: wysiwyg:// 50/ http:// undp – dprk. apdip.net 참조.

169) ▶국가: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일본,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벨기에, 호주, 영국,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한국, 브루나이, 헝가리, 체코,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RF, 브라질, 쿠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이집트,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 기관: EC, World Bank, IMF, ADB, UNICEF, WFP, FAO, IFAD, WHO, Rockefeller Foundation, World Vision Int., World Vision US, Interaction Merci Corp., Carter Center, OCHA, CRS, CARE, OXFAM, IFRC, Euro NGO, Asian NGO 등.

<표 III-1> AREP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추정비용

(단위: 백만달러)

	1998	1999	2000	합계
수해복구	30	63	-	93
화학비료 공장 복구				
남흥	20	20	20	60
흥남	33	-	-	33
재식림(reforestation)	1	2	2	5
능력배양	3	4	3	10
수확개선	60	30	9	99
합 계	147	119	34	300

자료: UNDP [Online]. Available: http://undp-dprk.apdip.net/data/actionplan.htm.

농업발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곡물생산증대와 생활수준개선을 위한 3년간의 AREP Action Plan에 합의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수많은 자금공여자와 투자자들이 Action Plan에 의해 제시되는 특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AREP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UN 산하기관들과 자금공여자들이 비용분담(cost-sharing) 협약을 통해 지원할 수도 있고 기존의 "UNDP Trust Fund for DPRK"[170]을 통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2차 원탁회의

북한당국은 2000년 1월 12일 농업재건 및 환경보호(AREP) 프로그램에

170) 동 기금은 북한의 이모작 등 농업재건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농업부문 외에 북한의 전반적인 개발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동 기금의 운영구조에서는 자금공여자들이 특정 프로젝트나 개발활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계정(account)이나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활동은 북한의 장관급대표들과 UNDP 상주대표(Resident Representative)로 구성된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관리되고 조정되어진다. 자금공여자와 원조기관들도 필요시 동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 제2차 주제별 원탁회의의 준비와 구성을 지원해 줄 것을 UNDP에 요청하였다 이에 UNDP는 2000년 6월 20 21일 이틀동안 AREP에 대한 주제별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회의에서는 1998년 5월 1차 원탁회의 이후 1999년까지의 AREP의 추진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차 AREP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III-2 > AREP 프로그램 추정비용(2000 2002년)

(단위: 백만달러)

프로젝트/하부 프로그램들	
농업지원투입프로그램(Inputs Sub-Programme):	
- 비료	123
- 여타 연료 및 농약	37
소계	**160**
농촌재건프로그램(Rural Rehabilitation Sub-Programme):	
- 경작지 재건 및 보호	11
- 관개 복구	28
소계	**39**
산림및환경프로그램 (Forestry and Environment Sub-Programme):	
- 불모지 개발	11
- 탁아소 개발	12
- 산림 및 임업부문 관리	10
소계	**33**
AREP 지원및능력배양프로그램 (AREP Support and Capacity Building Sub-Programme):	
- 종자(Seed) 생산	9
- 살충제 생산 및 지원서비스	2
- 농업부문 연구 및 관리	7
소계	18
총계	**250**

자료: UNDP. 2000.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p. 18.

1) 1998 1999년 AREP 추진결과[171]

북한의 농업재건을 위한 AREP 프로그램에 국제사회는 총 1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였고 2000년 6월 현재까지 8,5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지원액중 대부분이 IFAD와 OPEC 등 다자간 자금공여자로부터의 무상공여와 융자로 이루어져 있다(4,000만 달러, 71%). EU도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공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총 7,100만 달러 상당을 지원약정해 왔다. 양자간 자금공여국으로는 한국, 중국, 스위스, 영국이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고(21%), CARITAS, World Vision, Action by Church of Brethren 등 NGO 등도 총 지원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부터 북한은 1997년 대비 150만톤의 식량증산을 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사정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의 식량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2000 2002년 AREP 추진계획

2000년부터 2002년 동안의 AREP 프로그램을 위해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에 2억5,0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촉구하였다(<표 III-2> 참조). 2차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연간 곡물수요량이 450만톤이 될 것으로 UNDP는 전망했다

171) UNDP(2000). pp. 16-18.

<부록 Ⅳ>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172]

1. 신탁기금의 목적

신탁기금은 세계은행그룹과 외부 자금공여자들간의 재정적 및 행정적인 협약으로서 특정한 개발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공여자들이 세계은행에 자금을 무상공여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으로 회원국들의 경제개발 및 연구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2. 신탁기금의 종류

① 회원국의 특정 투자, 부문별 정책개발 연구, 기술지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Global and Regional Trust Fund "
②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회원국의 개발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공여국들이 협조융자하고 있는 " 협조융자 신탁기금(Cofinancing Trust Fund) "
③ 회원국의 세계은행 및 채권국에 대한 채무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경감 신탁기금 "
④ 선투자 및 실현성 연구, 프로젝트 준비, 능력배양 부문연구 및 훈련과 같은 회원국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신탁기금
⑤ 연구, 정책, 프로그램 분석, 경제 및 부문연구, 훈련과 같은 세계은행의 특정활동을 지원하는 신탁기금 등이 있다.

3. 신탁기금의 수혜조건

172) World Bank(1997)

세계은행은 세계은행내의 행정예산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만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이 효율적으로 조달되는 신탁기금만을 승인하고 있다.

민간부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은 세계은행이 자금의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와 신탁기금이 수혜국의 이익과 세계은행의 정책 및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그리고 자금공여자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만 세계은행은 승인하고 있다.

4. 신탁기금의 운영

세계은행의 협조융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局(Cofinancing and Project Finance Department: CAP)이 신탁기금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지고 있다. CAP는 일본의 Polic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PHRD)와 같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신탁기금 프로그램들과 컨설턴트 신탁기금 프로그램(Consultant Trust Fund Program: CTFP), 기술지원 신탁기금(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 TATF)을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5. 운영절차

가. 신탁기금 설립 제안

세계은행이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려면 먼저 Vice Presidential Unit(VPU)이 신탁기금 설립 위한 제안서(IBTF: Initiating Brief for Trust Fund)를 준비해야 한다. IBTF는 신탁기금이 지원하려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활동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자금조달 방안, 조건 규칙, 감독 및 평가방법 등을 정리한 것으로 VPU는 IBTF를

Cofinancing and Project Finance Department(CAP) 및 세계은행의 여타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신탁기금일 경우에는 지역본부의 Managing Director나 Operations의 승인이 필요하고 여타 모든 IBTF는 관련 VPU의 부총재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 재원조달 모색

신탁기금 설치에 대해 세계은행과 자금공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VPU와 CAP는 제안된 신탁기금이 세계은행과 합의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VPU는 동 합의문의 조건에 맞는 재원을 찾아야 한다. 세계은행과 자금공여자간의 합의문이 없거나 그러한 합의문에 특정 활동에 대한 신탁기금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VPU와 CAP 스탭들은 자금조달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 신탁기금 협약 체결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모든 신탁기금은 세계은행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데 세계은행과 자금공여자들은 먼저 법률국(Legal Department: LEG)에서 준비한 "Trust Fund Administration Agreement" 및 "Grant Agreement"을 점검하고 이를 체결한다 동 협약들은 기술지원과 협조융자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 활동을 위한 세계은행과 자금공여자들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라. 자금지급

세계은행과 자금공여자들이 신탁기금협약을 체결하면 회계국(Accounting Department: ACT)은 자금공여자와 협의를 통해 신탁기금 대한 자금공여액

을 결정한 후 신탁기금의 총예산을 결정하고, VPU는 세계은행의 예산과 회계시스템을 적용하여 신탁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지원 약정액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수혜국이 신탁기금으로 지원하기로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나면 세계은행은 세계은행(IBRD 및 IDA)의 일반융자조건을 적용하여 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마. 감독 및 평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신탁기금으로부터 자금지급이 이루어진 후 VPU는 신탁기금이 세계은행과 자금공여자들간에 합의된 신탁기금협약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신탁기금 운용에 대해 감독 및 평가를 한다.

바. 신탁기금 운용 보고서 작성

VPU 실무진들은 신탁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활동이 완료되면 수혜국에게 최종 자금지급액을 알리고 신탁기금협약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지급을 취소한다. 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활동이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VPU는 이행완료보고서(ICM: Implementation Completion Memorandum)을 준비하고 ACT는 최종 감독 및 평가를 위한 신탁기금 최종재정보고서(final financial statement)를 준비하여 자금공여자, 수혜국, 세계은행에 각각 제출하고 이를 확인토록 한다. CAP는 이행완료보고서 및 최종재정보고서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신탁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부록 V>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 설립

UNDP는 기존의 경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UN 기구였던 유엔특별기금(UNSF: United Nations Special Fund)[173]과 유엔기술원조확대계획(UNEPTA: United Nations Expanded Programme of Technical Assistance)[174]을 통합하여 1965년에 설립된 기술협력 지원기구이다.[175] UNDP는 현재 UN의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재원조달 창구이며, UN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조정하는 주관기관이기도 하다.

2. 활동목적

UNDP는 전세계의 지속적인 인적개발(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을 위해 국제협력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주요 재원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지속적인 인적개발을 위한 UN 산하기관들의 활동들을 통합시키고 이를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Box V> 참조).

3. 조직 형태

UNDP는 국가간 조직(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형태를 지니

173) 주로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174) UNSF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을 주로 지원한다.
175) 한국 외무부(1994), 26면.

< Box Ⅴ> UNDP 활동원칙

UNDP는 프로그램의 입안, 실행, 감독, 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 ▶ 회원국의 지속적인 인적개발 특히 빈곤퇴치에 역점을 두어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 전략, 정책 등 전반적인 부문에 회원국이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UNDP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국가기관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특히 여성들을 프로그램 협의 및 결정과정에 참여토록 독려한다
- ▶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원조관리를 위한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개발을 위한 국가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원조조정을 지원한다 국가에 대한 UN내의 개발지원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 원탁회의(Roundtable) 메카니즘이나 여타 원조조정 채널을 이용하여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지원한다
- ▶ UNDP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 정부를 지원하고 또한 상호 협력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 ▶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 습득한 최적방안들을 최대한 실행한다
- ▶ 프로그램입안은 결과중심으로 하고 프로그램 실행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 개발도상국간의 기술적 및 여타 경제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자료 UNDP. 1998.『Introducing the Organization』. p. 4.

고 있으며 UN 산하기관으로서UNDP의 사업활동내역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를 통해 UN General Assembly에 보고한다(그림1 참조).

< 그림1 > UNDP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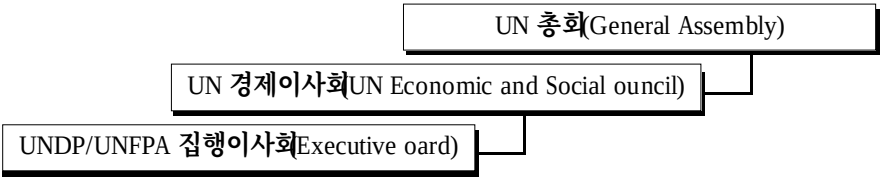

4. 회원

UNDP는 UN과 UN의 특정산하기관(specialized agencies) 그리고 UN내 모든 위원회(commissions)의 회원국과 참관자(observer)들을 회원대상으로 한다. 현재 UNDP는 전세계 132개의 country offices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70여개국 이상의 국가를 지원해 오고 있다.[176]

5. 사무국(Secretariat)

미국 뉴욕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6. 재원조달

UNDP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핵심적인 재원(core resource)과 비핵심

176) UNDP(1998c), p. 2.

재원(non-core resources)으로부터 조달되는데, 핵심적인 재원은 주로 UNDP 자체내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비핵심적인 재원은 지역 및 회원국에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핵심적인 재원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자금출연으로 조달하며, 비핵심적인 재원은 비용분담(cost-sharing)[177], 신탁기금(trust funds)[178], 수혜국정부의 현금출연(government cash counterpart contributions: GCCCs)[179] 등의 협조융자(co-financing) 형태를 통해 조달된다.

7. 조직

가. 행정처장(Administrator)

행정처장은 UN 사무총장이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와 협의하여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다. 행정처장은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 정책과 원칙에 따라 UNDP 사업을 관리하고 실행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행정처장은 UN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fund)과 프로그램 개발기관들을 조정하는 UNDG(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로부터 사업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고 있다.

---

177) 수혜국 및 자금공여국 정부의 예산, 국제금융기구들의 융자, 무상공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비용분담(cost-sharing)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일반적으로 UNDP의 핵심재원과 병행하여 사용되어진다.

178) 신탁기금은 특정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해 한 국가 및 여러 국가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179) UNDP 지원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수혜국의 현지통화(local currency)나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나.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집행이사회는UNDP의 운영방향을 정하고, 국가별 지원규모, 개발프로그램을 계획 및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행이사회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출되는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180] 집행이사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UN 총회에서 UNDP의 사업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다. 지역사무국(Regional Bureau)

UNDP는 아프리카(Africa), 아랍(Arab), 아시아·태평양(Asia and the Pacific), 유럽·CIS(Europe and the CIS), 남미·카리브연안(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지역에 5개의 지역사무국을 두고 있다.

라. Country Office

UNDP는 개발지원을 받는 국가에 Country Office를 두고 있으며, 상주대표(Resident Representative)를 두어 해당국가의 개발계획입안, 개발감독, 자문제공 등을 지원하게 하고 국가내 UN 활동을 총지휘하도록 하고 있다.[181] 상주대표는 일반적으로 UN 시스템의 현지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기상황에서는 'humanitarian coordinators'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기에 UN의 지원활동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

180) 경제사회이사회는 주요 지역별 그리고 자금공여국 및 프로그램실행국 등을 감안하여 36개국을 정하였다.

181) 한국 외무부, 앞의 책, 27면.

8. 재원할당

UNDP의 최우선목적은 지속적인 인적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이므로 UNDP 프로그램 재원의 90%가 전세계의 최빈상태에 처해 있는 약 66개 이상의 저소득국가에 지원되고 있다. 지원분야는 회원국의 행정능력 배양과 공공부문 개발, 환경개발 등에 지원된다.[182]

9. UNDP 기금

UNDP는 정규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특정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금들을 운영해 오고 있다.

---

182) ①빈곤퇴치활동지원(▶빈곤퇴치정책, 전략, 실행능력 배양, ▶회유하는 피난민 수용, 무기해산 등 지역공동체의 anti-poverty 활동 지원, ▶기술, 직업, 여성권리, 정보, 경작지, 에너지 서비스, 중소기업개발 등 지원,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지원, ▶HIV/AIDS의 사회 및 경제적인 문제 해결 지원), ②행정능력배양지원(▶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권장하여 민주화와 빈곤층들의 정치력 강화 지원, ▶재판권, 선거권, 의회시스템 강화, ▶인권, 법률, 여성권리 개선, ▶민주화와 지방정부 강화, ▶시장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민간부문개발, 세계화문제 해결 지원, ▶행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공행정 개혁 지원, ▶위기관리, post-conflict 상황에서의 복구에 대한 정부능력 배양), ③공공부문개발지원(▶지속적인 인적개발을 위한 공공지출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원조조정 및 관리 개선, ▶지속적인 인적개발을 주요 국가계획 및 정책과 통합, ▶금융기관의 개혁 및 현대화, ▶채무관리, ▶외부재원조달 및 원탁회의 과정(roundtable process) 지원), ④환경개발지원(▶지속적인 환경개발을 위한 정책입안과 실행, ▶건조지, 반건조기 수자원, 삼림, 생물 등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기후, 오존층보호 등 에너지 보호 및 공기환경 유지, ▶지속적인 농업 및 어업 개발을 통하여 식량을 안전하게 보존, ▶환경에 대한 통계 및 정보시스템 개선).

가. 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

동 기금은 최빈국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발과 행정적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동 기금은 국가별 지역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및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확대, 여성권리 신장, 성차별 철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다.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동 기금은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회원국에 파견하여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자체의존을 위한 공동체기반 설립(community-based initiatives for self-reliance), 인도주의적 구제(humanitarian relief) 및 복구(rehabilitation), 선거 및 평화정착 과정 등 4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라. Special Unit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SU/TCDC)

동 기금은 회원국들의 개발전략과 세계화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마. 기타

UNDP는 세계은행과 UN Environment Programme(UNEP)과 공동으로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를 실행하고 있다. GEF에는 주로 오존층 보호, 기후 온난화방지, 수자원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10. UNDG(UN Development Group)

1997년 UN은 UN 기금들, 개발 프로그램들, 여타 개발기관들을UNDG로 그룹화 하였다. UNDG는 회원국들에 대한 개발지원에 있어 보다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그룹은 UNDP의 집행위원회가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UNDG에 속하고 있는 회원으로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WFP(World Food Programme),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OPS(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AIDS(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CHS(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UNDCP(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DESA(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OHCHR(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Regional Commissions ECA, ECE, ESCWA, ESCAP, ECLAC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용진 1995.『북한의 대외 금융정책 서방의 신용 재획득』. 연구보고서 95-5(No.7). 서울: 통일시대연구소

국제금융센터 2000. 6. 2.「국제기구가 집계한 북한 대외채무 현황」. 하이라이트분석. 서울: 국제금융센터

국제민간경제협의회 1990.『베트남 자원조사단 참고자료』. 서울: 국제민간경제협의회.

권율. 1993.『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제도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윤 2000.「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한 경제협력」8월. 서울: 통일연구원

김혜경 1997.「OECD회원국 개발NGO의 활동유형과 과제」.『동서연구』.제9권 제2호, 101-137면.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남궁영 2000.「북한의 대외정책」.『아태경제학회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87-92. 서울: 아태경제학회

남덕우. 2000. 3.「왜 동북아 개발은행이 필요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각년호『북한투자실무』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훤일 1997.「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금융지원가능성 검토」.『통일경제』 60-90면.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장형수·이창재·박영곤 1998.『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KIEP 정책연구98-1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형수·박영곤 1999.『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KIEP 자료논문 99-2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형수· 박영곤 2000.「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KIEP 세계경제』 5월.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형수. 2000. 9.「(남북한 철도 연결의)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방식」.『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조동호 1997.「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전홍택、이영선 편.『한반도 통일 시의 경제통합전략』501 – 565면.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조한범 1998.『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한국 외무부. 1994.『국제기구편람』서울: 외무부.

한국은행 1998. 12.『국제금융기구』서울: 한국은행

한국은행 각년호『북한 GDP 추정결과』서울: 한국은행

한국 재정경제원 1993. 4.『국제금융기구 편람』. 서울: 재정경제원 금융협력담당관실.

<국외문헌>

Alcira Kreimer · Robert Muscat · Ann Elwan · Margaret Arnold. 2000. *Bosnia and Herzegovina: Post – Conflict Reconstruc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 – 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bson, Bradley. 2000.“ North Korea on the Brink: A World Bank Assessment.” In Suchan Chae and Kap – Young Cheong, eds. The Post Conference Volume of North Korea Workshop held at the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t Rice University in December 1998.

Bae, Jin – Young. 1996. “The Fiscal Burden of Korean Reunification and Its Impact on South Korea’s Macroeconomic Stability.” Joint U.S. – Korea Academic Studies 6.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Bulow, Jeremy and Kenneth Rogoff. 1988. “The Buyback Boondoggl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675 – 98.

Cardoso, Eliana A. and Rudiger Dornbusch. 1989. “Foreign Private Capital Flows.” In H. Chenery and T. 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ume II, Chapter 26, pp. 1387 – 143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89.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90.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91.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Chae, Suchan and Hyoungsoo Zang. 2000. “Develop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Academic Symposium of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Washington, DC. (September 19)

Chang Hyun – sik. 1999. OECD/DAC’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Its Cooperation with NGO. Seoul: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ho, Myung Chul and Hyoungsoo Zang. 1999.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Journal of Asia Pacific Affairs*, Vol. 1, August, pp. 165 – 211.

Daniel, Cohen. 1992. “The Debt Crisis: A Postmortem.” *NBER Macroeconomics Annual*, Vol. 7, 65 – 105, Cambridge, MA: MIT Press.

Dooley, Michael P. 1988. “Buy – Backs and the Market Valuation of External Debt.” *IMF Staff Papers*, Vol. 35, no. 2, pp. 215 – 29.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ukagawa, Yukiko. 2000. "Japans Economic Assistanc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xpected Policy and the Tasks for th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9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KINU. Seoul.

Hopkins, Thomas J. 1998. *Evaluation of the Round-Table Mechanism*: *A Participatory Approach*.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IMF. 1990. Economic Issues Occasional Paper 75.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cobson, Harold K. and Michel Oksenberg. 1990.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GATT*: *Toward a Global Economic Ord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Japan · World Bank. 2000. *Aid Effectiveness in the West Bank and Gaza*. Washington, D.C.: World Bank.

Krueger, Anne O. and Vernon W. Ruttan. 1989. "Assistance to Korea." In A. O. Krueger, C. Michalopoulos and V. W. Ruttan, eds. *Aid and Development*, Chapter 13, pp. 226 – 249.

Leipziger, Danny M. 1998. "Thinking About the World Bank and North Korea." In Marcus Noland, 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pter 11: 201 – 219.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Marcus Noland. 2000.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ECD. 1992.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Development Assistance Manual*.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5. *Development Co – 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5 DAC Repor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6a. *Synthesis Study of NGO Evaluation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6b. *Development Co – 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7. *Development Co – 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7 DAC Repor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8a. *Stakeholders for Development*: *Fourth Informal Government – NGO Dialogue on the Development Partnership Strategy Jointly Organised by the Development Centre an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8b. *Development Co – 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DAC Repor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9a. *Development Co – 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9 DAC Report*. Paris.

OECD. 1999b. *Development Partnership Forum*: *Aid Co – ordination to Development Partnership*.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9c. *Results Based Management in the Development Co – ordination Agencies*: *A Review of Experienc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0. *Development Co – ordin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000 DAC Repor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Silva, Leelananda. 1999. Aid Co-ordination, Discussion paper for the UNDP/MDGD.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Streeten, Paul P. 1989.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 Chenery and T. 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ume II, Chapter 22, pp. 1153 – 1186.

UN. 1990. Debt Equity Conversions.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New York: United Nation.

UN. 1999.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 – 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ew York: United Nation.

UN · World Bank. 1999. *Overview of External Funding Requirements for East Timor*. Washington, D.C.: World Bank.

UNDP. 1994. *Aid Coordination and Management by Government: A Role for UNDP*.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96. *Developing Capacity in aid Cooperation and Management in Vietnam*.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98a. *Evaluation of the Round – Tables Mechanism: A Participatory Approach*.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98b. *Viet Nam*: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998*.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98c. *Introducing the Organization*.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99a. *Aid Co – Ordination*. *Chapter V. Roundtables and Consultative Groups*.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99b. *Rethinking Regional: Looking Beyond Country Round Tables*.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99c. *The Round Table Mechanism* (*RTM*)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November)

UNDP. 2000.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ew York: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World Bank. 1989a. "Aid Coordination Groups." *Operational Directive 14. 30*.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1989b.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Preparing Consultative Group Meetings." World Bank Operational Directive 14.30 – Annex A, Washington, D.C.: World Bank. (March)

World Bank. 1995.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Aid: Lessons for Donors*.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1997. "Trust Funds." World Bank Operational Manual: OP14. 40 & BP 14. 40. Washington, D.C.: World Bank. (February)

World Bank. 1998. "The Partnership Approach to Development Assistance: Early Country Experiences." Annex 6, p. 47 of Discussion Paper.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roposed Actions for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1999a. "Carrying the World Bank Program into the Next Millennium." *West Bank and Gaza Update*. Third Quarter.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1999b.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World Bank – Supported Proj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1999c. "Aid Coordination and Post – Conflict Reconstruction: the West Bank and Gaza Experience." Precis, No. 185. Washington, D.C.

World Bank · UNOSCOT. 1999. *Donor Investment In Palestinian Development 1994 – 1998*. Jerusalem: World Bank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Coordinator in the Occupied Territories.

World Bank. 2000a. "Building Blocks for the Future." *West Bank and Gaza Update*. Washington, D.C.: World Bank. (August)

World Bank. 2000b. "Trust Fund for East Timor." *Update No. 3*.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2000c. *Assessing Aid*.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2000d. *Entering the 21st Century*: *World Development Report 1999/2000*. Washington, D.C.: World Bank.

Young, Soogil, Chang-Jae Lee and Hyoungsoo Zang. 1998. "Preparing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Policy Challenges to South Korea." In Marcus Noland, 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pter 14: 251-271.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Zang, Hyoungsoo. 2000.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per presented at Rice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the 26th PAFTAD conference and ASEF conference.

Executive Summary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obilizing Develop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

Hyoungsoo Zang · Young-Gon Park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inevitably induce an additional fiscal burden for South Korea. The relentless trend of the severe economic conditions in North Korea, since 1990 – including the shortages of food, raw materials, and foreign exchange –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short to medium-term, at the very least. South Korea's economy has also recently been challenged by its own financial crisis and, as a consequence, the weight of the burden has become relatively heavier.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omes from the fact that South Korea, unfortunately, does not have enough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rehabilit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t is obvious that North Korea needs substantial amount of foreign funding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its economy, and it is also obvious that South Korea is not rich enough to cover all of the expenses. Thus, the financing needs stemming from Kore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satisfied by foreign financing on a much larger scale than in the German unification case.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for creating a framework for initiating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Once North Korea join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it will be able t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on concessional terms as well as various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IFIs. Helping North Korea to join thes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be the first step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a practic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process of North Korea gaining membership in the key IFIs needs some time in order to clear all the hurdles. Therefore, it is equally important to discuss what other modes of support are available to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its current non – member status.

This study puts forward two conceivable proposals in this regard. One is the creation of the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INKDAG) through which financial, as well as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be channeled and a multilateral policy dialogue with North Korea will be maintained. Participants of the group could comprise major donor governments, major IFIs, UNDP, 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international aid agencies. In the early stages of its operation, South Korea would need to take a central role in one way or another. As North Korea 's involv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epens, and finally, as major IFIs are allowed by major stakeholders to participate more intensely in the Group, INKDAG could incrementally transform itself into a formal Consultative Group (CG) led by the World Bank with Banks financial allocations.

The benefits of INKDAG are the following. First, assistance through multilateral mechanism is less susceptible to political concerns than bilateral channels, for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Second, a collective approach of coordinating resource mobilization is cost – effective and also compensates for the recipient country 's lack of

diplomatic capacities to reach out to many donors. Third, from the donors point of view, a multilateral policy dialogue mechanism is better suited for preventing aid duplication and for assuring transparency of the economic assistance provided. Fourth, but not the last, development assistance needs a more sophisticated policy coordinating mechanism among donors than humanitarian aid does.

The mechanism need not involve substantial financial assistance from major IFIs so that it would be able to evade the domestic legal problem of a major stakeholder. This is also needed for the swift provision of needed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Even though all hurdles inhibiting North Koreas admi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cleared, actual disbursement of substantial financial assistance would take some more time. The mechanism could act as an interim assistance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second proposal concerns North Koreas external debt problem. Without the initiation of debt relief talks on rescheduling or reductions, North Korea is,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ou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Because of North Koreas default history, without collateral or guarantees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does not normally provide new loans until North Koreas debt overhang problem should be cleared. Practically, without initiating debt relief talks on rescheduling or reductions, North Korea will be ou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not receiving any commercial bank loans, and so the burden of official donors will be heavier. It is time to think about bailing – in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sector creditors to North Korea, let alone Paris Club official creditors participation in the debt relief negotiation process.

Furthermore, even with North Korea still not having been introduced in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utilizing 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commercial debt overhang, could be of some practical use. The following proposal could be considered as a complement to straightforward debt relief.

Nowadays, there are increasingly many cases in which economic assistance funded by donor governments, but delivered through NGOs. Greater participation by NGOs in aid operations would be more acceptable to North Korea than would explicit provisions by the donor governments. An interesting example of the utilization of NGOs in the course of clearing the insolvent debts of heavily indebted countries through debt – for – equity swaps need to be examined.

A debt – for – equity swap is a deal converting debtor country's foreign debt into foreign equity in domestic asset. Lets assume that a country defaults on a payment to its external debt with a face value of one dollar. Due to the default, the market price of the debt would drop to 10 cents in the secondary market. Then, the debt relief required for clearing all the debts of the country would cost only 10 cents. Now, suppose that a donor country makes a contribution of 10 cents, buys the debt in the secondary market and gives it to an NGO. The NGO goes to the debtor country and swaps the (foreign exchange denominated) debt for local currency, with some degree of discount being applied (e.g. equivalent of 5 cents). With the local currency, the NGO conducts projects to meet its own objectives. The idea of swapping debt for some kind of domestic asset that provides a guarantee that the NGO will be able to protect the debtor country's natural resources may be termed debt – for – environment or debt – for – nature. If the objective of the NGO is

the provis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n we may call the scheme debt – for – development or debt – for – aid.

The donor community does not lose too much since the debt is already in default and 10 cents is the prevailing price on the secondary market. The debtor country ends up by clearing its debt of one dollar by paying only 5 cents in local currencies and also receiving either environmental or developmental assistance. The debtor country's central bank, however, ends up with domestic monetary liabilities or domestic debt. We think that North Korea may very well be interested. The task would be made more feasible under a mult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such as INKDAG, in which policy dialogue among major donors as well as with the recipient country is well coordinated.

An important task is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aking the lead in organizing an international coordination mechanism comprised of major donor governments,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UNDP, NGOs, and international aid agencies, to develop a framewor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umbrella of the mechanism, it is time to consider the possible debt negotiation process of Paris Club official creditors. Debt – for – equity swaps, especially through utilizing NGOs,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cognize the economic benefits of an increasingly stable and secure Korean peninsula as the North – South dialogue progresses, and be ready to make due contribution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North Korea needs to request on its ow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any conceivable support.

KIEP 발간자료 목록

■ 調査分析

97-01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 部門 進出現況/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進出現況과 展望/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硏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 에 관한 紛爭/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 關係/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制度/ 李炯根
98-01 80년대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鄭仁敎·李昌在
98-03 APEC 연구시리즈 □ 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98-05 APEC 연구시리즈 □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鄭聖哲·李明振
98-06 APEC 연구시리즈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朴成勳
98-07 APEC 연구시리즈 □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연구시리즈]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朴泰鎬·文宇植 外
98-09 APEC 연구시리즈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연구시리즈 □ APEC 지

1990 96년까지의 발간자료목록은 연구원 Hom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 EU 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2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 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蔡旭 · 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 · 李晟鳳

99-01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李晟鳳 · 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과 政策課題/梁俊晳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 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4 金融情報機構(FIU)制度 導入方案/ 安炯徒 外

00-05 國際協力體 設立을 통한 北韓開發 支援方案/ 張亨壽 · 朴映坤

張亨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4)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1993)
세계은행(IBRD)(1993 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7 2000)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現, E-mail: hzang@email.hanyang.ac.kr)
著書 및 論文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공저, 1998)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공저, 1998)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공저, 1999) 외

朴映坤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졸업(1995)
한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제학 석사(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yg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공저, 1998)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공저, 1999)
『투명성 제고를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공저, 2000) 외

調査分析00-05

國際協力體 設立을 통한 北韓開發 支援方案

2000년 12월 20일 인쇄
2000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3460-1178 FAX:3460-1144

인 쇄 비봉출판사 전화:3142-6555 대표 朴琪鳳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轉載 · 複製를 금함〗

ISBN 89-322-7066-X 94320 값 7,000원
89-322-7044-9(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투자부문 (계간지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G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 FAX : 02)3460-1144
E-mail : sklee@kiep.go.kr

■ 회원특전

· S 기관회원에 대해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 소장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표시를하여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무역·투자	B 구주경제	C 미주경제	D 아주경제	E 계간지	F 월간지	G 주보
기관회원 ⌘ 일반회원 ⌘ 교환기관 ⌘ OB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기재하지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Ⅱ 00-05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obilizing Develop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

Hyoungsoo Zang · Young-Gon Park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장기간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개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원조국들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자간 국제협력체인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국제금융사회로부터 더 이상의 상업적인 신규차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swap)"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94320
9 788932 270661
ISBN 89-322-7066-X
89-322-7044-9 (세트)

정가 : 7,000원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3460-1178,1179 FAX:3460-1144